

바다의 힘!

2015년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목 차 |||

제1장 총괄 1

- 1. 목 표 1
- 2. 여건 전망 1
- 3. 추진방향 2
- 4. 재난·안전관리체계 등 3

제2장 중점추진과제 7

- 1. 연안여객선의 안전 강화 7
- 2. 한국형 e-Navigation 구축 9
- 3. 선원대상 법정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자격기준 강화 12
- 4. 선박 안전기준 및 검사 강화 16
- 5. 일반인의 해양안전교육 및 체험기회 확대 18
- 6. 중대 해양사고 예방활동 강화 21

제3장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 24

1. 자연재난관리대책 24

- 1-1 풍수해대책 24
- 1-2 지진·해일대책 33

1-3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	37
1-4	적조대책	38
1-5	조수대책	47
1-6	연안침식방지	51

2. 사회재난관리대책 52

2-1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책	52
2-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대책	61
2-3	육상화물운송 차질 등 위기관리	67
2-4	전염병 대책	69

3. 안전관리대책 72

3-1	해상안전(선박사고) 대책	72
3-2	국가기반체계 보호(항만운영분야)	78
3-3	국가기반체계 보호(항만건설분야)	89
3-4	해파리 대책	103
3-5	수산물 안전관리대책	109

제4장 재정투자계획 111

제5장 행정사항 113

제1장 총괄

1. 목 표

- 선제적, 예방적, 근원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국민 생활안전 관리 강화
- 재난발생 시 신속·효율적인 대응 및 복구대책 수립으로 위기 대응 능력 제고

2. 여건 전망

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증가

- 기후변화는 인류는 물론 지구상의 다른 생물종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21세기 최대의 환경문제로 부상
 - 산업발전과 에너지 소비의 증대로 인한 탄소 배출의 증가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킴
-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 폭설,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지속기간은 길어질 것으로 예상
 - 지속적 예방활동으로 풍수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피해액은 증가할 것임

나. 국민의 안전욕구 증대

- 지속적 예방 노력으로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국민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
-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의 증가와 함께 국민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며, 특히 안전에 대한 욕구와 민감성이 높아지고 있음

다. 재난·안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부처(기관)간 협업을 통한 다양한 안전관리대책 추진
 - 새정부 출범 후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관계 부처간 협업을 통한 안전대책 마련 추진
- 재난 및 안전관리가 복구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
 - 재난 발생 후 복구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 절감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공감대 형성

3. 추진방향

가. 예방위주의 안전점검 실시 및 선제적 재난관리

-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한 정비·점검 강화
- 재난 위험요인의 지속적 발굴과 능동적 대응을 통한 피해의 최소화

나. 능동적인 국가기반체계 관리

- 국가기반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또는 방지함으로써 위기 시에도 국가기능을 유지하는 기반 제공

다. 신속·정확한 재난상황보고 체계 정립

- 각종 재난·안전상황에 대한 정보가 종적·횡적으로 신속하게 보고·전파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 협조체제 강화

라. 즉각 대응 및 긴급복구체계 확립

- 재난 발생시 신속·정확한 초동대처·초기대응 체계 구축 및 응급복구
-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강화 및 신속한 복구 물자동원 등 대응 체계 유지와 긴급 복구체계 확립

마. 재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대형재난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 발굴·분석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미래 재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4. 재난·안전관리체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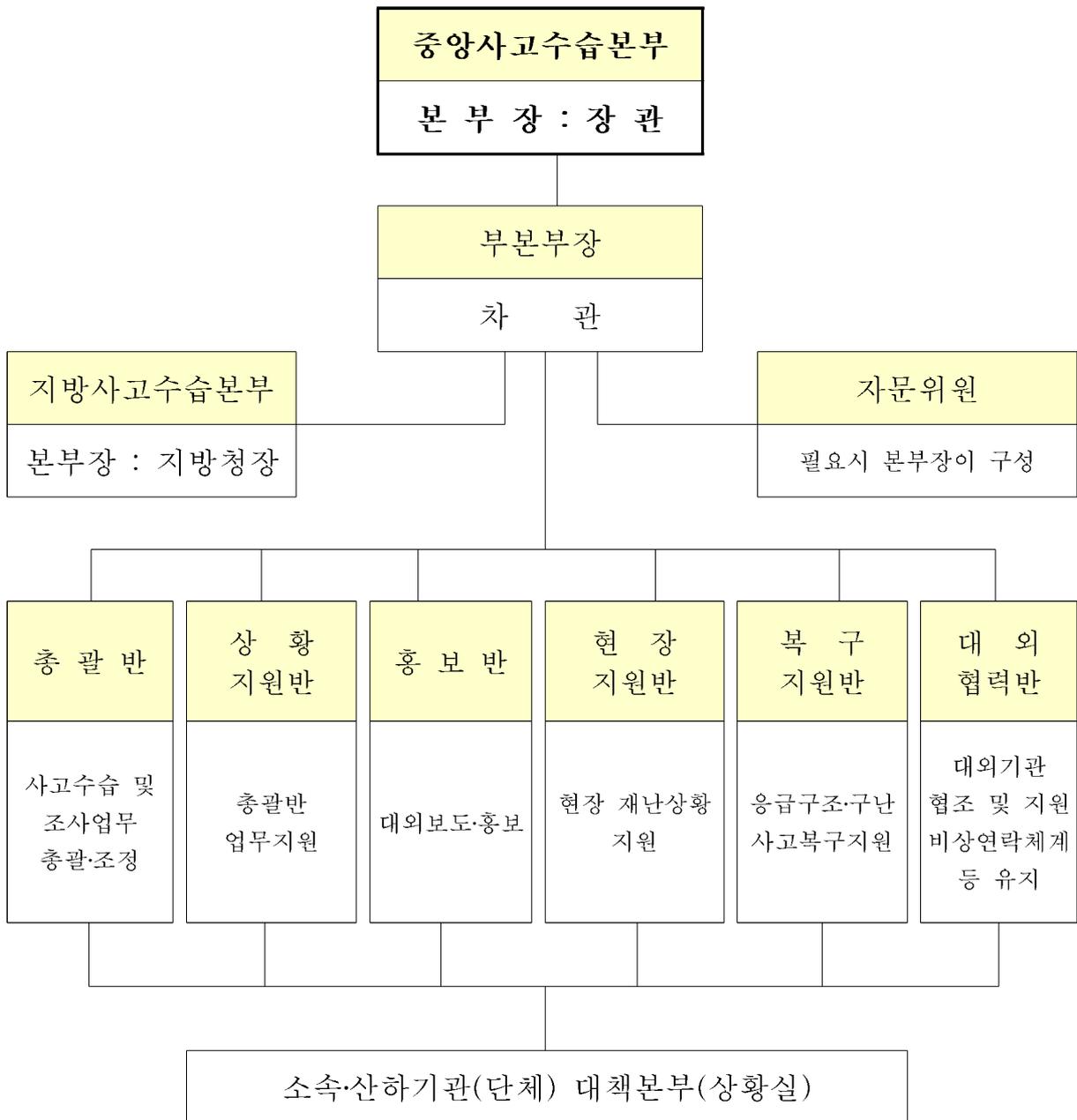
가. 재난관리체계

- 안전책임관 지정·운영
 - (정) 기획조정실장, (부) 해사안전관리과장
 - * 「국민안전 종합대책(13.5.21, VIP 보고)」의 후속조치로 각 부처 안전책임관 지정 운영
 - 기능 : 재난 관련 정책업무 총괄, 재난 발생 시 위기경보 발령, 대응체계 가동 및 관계기관 연계체계 구축·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 설치 및 상황관리 전담요원 배치
 - 위치 : 해양수산부 회의실 또는 종합상황실 내
 - * 풍수해(태풍 등) 비상대책반 운영은 영상회의실 등 활용
 - 근무방법 : 재난의 유형, 규모 및 대응·수습 방안 등에 따라 다르게 편성
 - * 제3장(재난 및 안전관리대책)의 재난 유형별 체계도 참고

○ 정보수집 및 보고·전파 방법 등

- 정보수집 : 산하기관(단체) 보고, 자체 정보수집 등
- 보고·전파 방법 : FAX 또는 E-mail

【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도(예시) 】



* 재난 유형, 규모, 대처 방안 등 상황에 따라 재난 분야별 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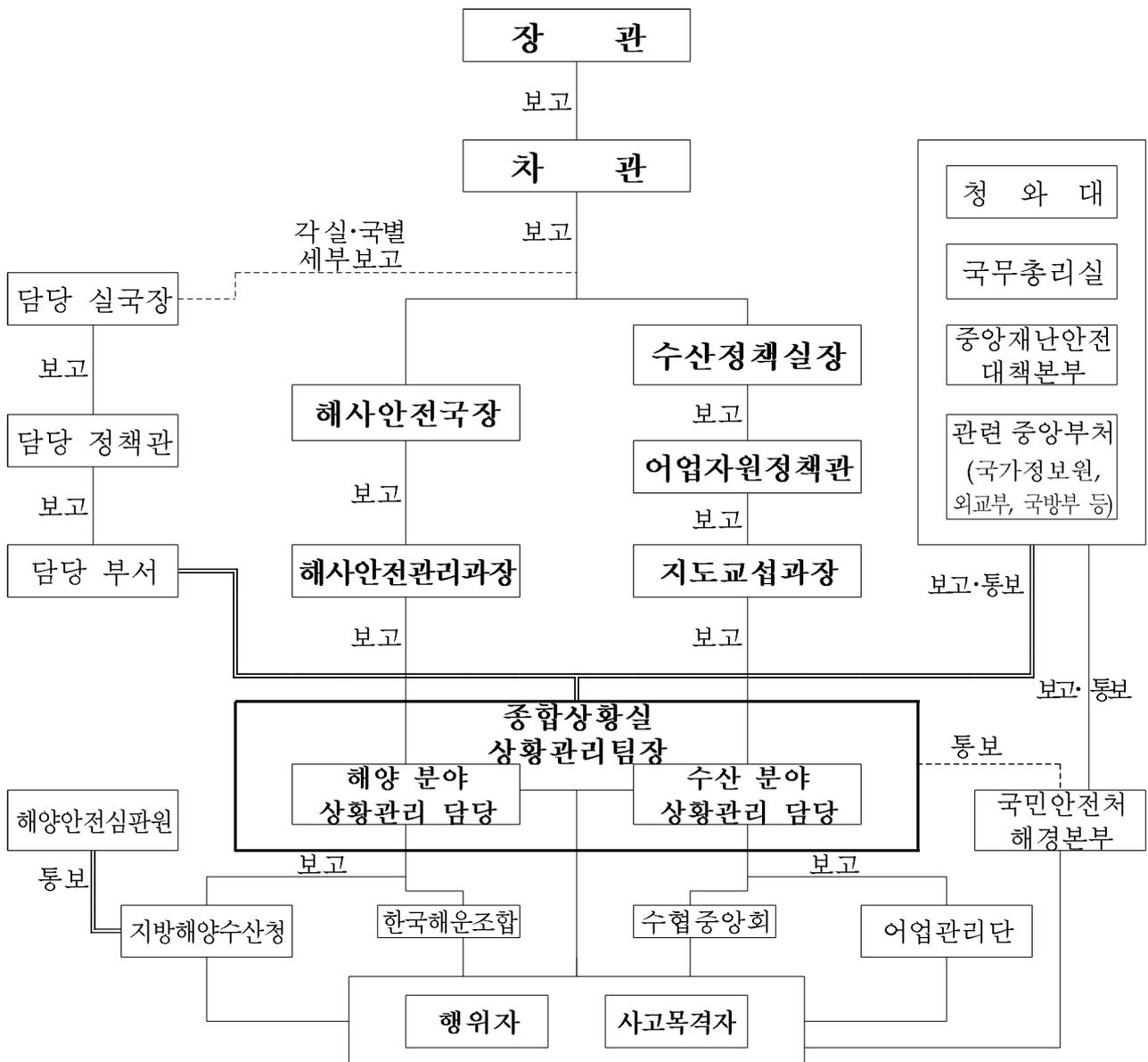
나. 상황관리체계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 종합상황실은 사고 접수 시 상황파악, 대내·외에 보고·전파 및 인명·재산·오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습 지원

○ 사고상황을 접수한 담당부서는 후속조치 실시 및 조치사항 통보

【 보고 계통도 】



다. 분야별 재난관리부서 현황

업무	분 야	주관부서	협조·지원부서
재난관리주관 (표준매뉴얼)	대규모 해양오염	해양환경정책과	운영지원과
	적 조	양식산업과	해양보전과
	조 수	해양영토과	국제협력총괄과
	해양 선박사고	해사안전관리과	수산정책과
	여객선	해운정책과 연안해운과	소득복지과
	연근해어선	지도교섭과	어촌양식정책과
	원양어선	원양산업과	어촌어항과
협조·지원 (실무매뉴얼)	풍수해	해사안전관리과	항만운영과
	지 진	해사안전관리과	해사안전정책과
	대형 화산폭발	해사안전관리과	항만개발과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해양환경정책과	지방해양수산청
	GPS 전파혼신	해사안전시설과 지도교섭과	어업관리단
	우주전파 재난	해사안전시설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육상화물운송	항만물류기획과	국립해양조사원
	감염병	해사안전관리과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15.1.8)에 따라 재난관리 총괄부서로서의 업무가 비상안전담당관에서 해사안전관리과로 이관

제2장 중점추진과제

1. 연안여객선의 안전 강화(연안해운과)

가. 개요(목적)

- 연안여객선에 대한 여객·화물관리 강화 및 안전관리체계 개편 등을 통한 연안여객선의 안전 강화

나. 주요내용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 (선사) 자체 안전관리 전담인력(DP: Designated Person) 채용 또는 안전관리 전문회사 위탁 등 선사의 안전관리 책임·의무 강화
 - (운항관리자) 해운조합에서 분리하여 공공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 안전관리 전문성·독립성* 확보
 - * 운항관리자 직무 분석 등을 통해 적정인력 확보 및 주기적 교육 병행 추진
 - (정부)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인력을 해사안전감독관으로 채용, 선사 및 운항관리자의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직접 지도·감독
- 여객선 안전업무 환원을 통한 선박 안전체계 일원화
 - 선박 안전관리의 체계적 일원화* 및 정책·현장업무 간 연계성 확보를 위해 舊 해양경찰청에 위임한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해수부로 환원
 - * 기존 현장안전관리: 외항여객·화물선, 내항화물선(해수부), 내항여객선(해경청)
 - 해사안전분야 전문가를 채용, 선박·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운항관리규정 심사 등 수행

○ 실효성 있는 운항관리규정 수립·운용

- 정부는 표준운항관리규정을 마련·제공하고, 선사는 개별 항로 및 선박 여건을 반영하여 자체 운항관리규정 수립할 수 있도록 現 운항관리규정 개정('15.下)

* 시행시기·주체·방법·기준·복원성 유지방안 등 핵심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

- 운항관리규정 심사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심사*는 해사안전감독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팀에서 수행하고, 주요 운항여건 변화 시 재심사**

* 운항관리규정 심사 절차·방법, 제출자료(선박검사증서 등) 등 명시

** 운항계획, 항로상 위해요소(어장, 조류 등), 선박·안전시설 등 확인

- 운항관리규정 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해 출항 전 점검보고서 개정 및 운항관리자 매뉴얼 마련 등을 추진하여 차질 없는 운항관리 업무 수행기반 마련

○ 여객 및 화물관리 강화

- 쏘 이용객(운전자·동승자, 유아 포함)에 대한 전산발권(인적사항 전산입력) 실시 및 승선 시 신분확인을 통한 승객관리 철저('14.6~)

* (발권)신분증 확인 후 발권 → (개찰)승선권 확인 → (승선)신분증 확인 후 승선

** 이용객 사전안내 등을 위해 안내방송, 브로슈어 등 제작 및 홍보 병행 추진

- 여객선 선적 화물량의 신속·정확한 파악을 위해 차량('14.7~)과 화물('14.10~)에 대한 전산발권 전면 시행

* 계량증명서 등을 통한 계측 및 적재한도 초과 시 발권 자동중단 등을 통해 화물과적 차단

다. 추진일정

연도별	분기별	주요내용	장단기 구분
2014년	3/4분기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수립 혁신대책 후속조치 연구용역 착수 여객/화물 전산발권 도입	즉시실행
	4/4분기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업무 일원화 해운법 개정	1년이내
2015년	1/4분기	해사안전감독관 채용·업무 수행	1년이내
	2/4분기	해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년이내
	3/4분기	운항관리자 조직 이관 표준운항관리규정, 운항관리자용 업무 매뉴얼 등 마련	1년이내

라. 소요예산(15년) : 해당없음

2. 한국형 e-Navigation 구축(해사안전시설과)

가. 개요(목적)

-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 기술 연구개발(R&D)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한국형 e-Navigation* 구축

* ❶ (선박) 전자해도 기반 항법시스템 표준화, ❷ (육상센터) 해상정보 분석 및 관제·모니터링으로 운항정보 제공 및 선박안전운항 원격지원 ❸ (통신) LTE 및 무선통신 디지털화로 초고속 해상 정보통신망 구축

- 국제해사기구(IMO)는 인적요인에 의한 해양사고 감소를 위해 e-Navigation 도입을 결정('06.5)하고 '19년부터 시행 예정

나. 주요내용

○ 한국형 e-Navigation 구축 전략이행계획 수립

- 향후 5년간('16년~'20년) 추진될 한국형 e-Navigation 구축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정책 비전 및 방향에 대한 중장기 이행전략 수립('14.5)

* (주요내용) 해양안전 및 물류 체계 개선 및 핵심 전략기술 연구개발 계획, 해양안전 기반 인프라 구축 계획, 법제도 마련, 연도별 예산투입계획 등

○ e-Navigation 추진체계(거버넌스) 구축

- 해양안전정보 연계, e-Navigation 제도 운영 등을 위한 관계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15.4)

* 산업부(조선), 국방부·국정원(보안), 미래부(해상통신), 국민안전처(재난안전망) 등

- e-Navigation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관리·전문성 강화, 대국민 홍보를 위한 e-Navigation 포럼 창립('15.4)

* e-Navigation 중장기 발전방향 자문 및 대국민 홍보 창구 역할

○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초고속 해상무선통신 시범사업 추진

- 재난안전망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강원도 일부 지역에 장거리 해상용 안테나 설치 및 통합공공망 주파수(700MHz대) 시범운용('15.11)

○ e-Navigation 국제표준 주도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e-Navigation 주요 국제표준 제·개정 관련 기구* 대응강화(연중)

* 선박·해양(IMO), 해상무선통신(ITU), 정보교환 표준(IEC), 기술기준(IALA) 등

- 국제해사기구(IMO)의 e-Navigation 주요추진 과제의 세부계획 수립
작업 적극참여 및 우리나라 선점 목표과제 적극 대응
- 호주·중국 등 아·태지역 주요 국가들과의 e-Navigation 기술
개발 및 정보공유를 위한 지역협력체 구성 추진

다. 추진일정

연도별	분기별	주요내용	장단기 구분
2015년	1/4분기		
	2/4분기	전략이행계획 수립, 포럼 창립, 협업체계 구축	즉시실행
	3/4분기	지역별 사업설명회 실시	즉시실행
	4/4분기	사업단 구성 검토 등 해상무선통신 시범사업	즉시실행
2016년	1/4분기	연구개발 사업 1차년도 추진	1년이내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17년 이후	-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중장기

라.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14년 실적	'15년 계획	비고*
소 계	-	-	
한국형 e-Nav 구축	-	-	'16년부터 본사업 추진 예정

* 내역사업인 경우 내역사업명을 비고란에 표기

3. 선원대상 법정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자격기준 강화(선원정책과)

가. 개요(목적)

- 선박 위험이나 충돌시 등에 선원의 대응능력 제고 및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선장, 선원에 대한 벌칙 대폭 강화

나. 주요내용

- 선원 안전 교육 강화를 통해 선박비상시 대응능력 제고
 - 선원 안전교육 개선 및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실습 위주로 교육 과정 개편('14.7~)
 - 안전 실습교육 평가제 도입, 교육횟수 당 교육인원 축소(40→20명), 교육과정에 선원직업윤리(Good Seamanship) 과목을 포함하여 실시 중
 - 선원 안전교육 및 선내 비상훈련 관리 감독 및 강화를 위해 선원법·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15. 1. 6공포)
 - 선원 안전재교육 면제 규정 폐지, 교육기간 확대, 여객선 직무 과정 신설 및 교육 유효기간 설정 등 선원 교육 강화

【 선원 안전교육 강화 주요내용 】

- 선원안전 재교육 폐지 : (기존) 최근 5년내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선원의 경우 안전 재교육 면제
- 기초안전교육 (어선부원) : 재교육(1일) 및 유효기간(5년)을 신설
- 여객선 선원 교육 강화
 - 외항 여객선 선원에서 모든 여객선 선원으로 교육대상 확대
 - 여객선 승선 해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여객선 직무과정 신설
- 여객선교육 (여객선상급) : 교육기간(2일→4일) 및 재교육기간(1일→2일)을 확대

- 선내 비상훈련 실시 결과를 항해일지에만 기록하였으나 동영상·사진 기록·보관토록 하여 선내 비상훈련 관리·감독 강화
- 선박 종합 비상훈련장을 구축하여 화재, 퇴선, 전복 및 충돌 사고 등 시나리오별로 실제와 같이 비상 상황 훈련 실습하여 비상 시 대응능력 강화('15.12)

* 선박 종합비상 훈련장 구축(예산/설치장소) : 35억원('15예산) / 해양수산연수원

○ 선원의 소명의식 제고 및 여객선 선장의 자격 기준 강화

- 제복 착용, 여객선 안전관리 전담 승무원,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강화 등의 시행을 위해 선원법 개정을 완료('15.1.6. 공포)하였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추진('15.6)

* 하위법령 개선 필요 주요내용 : ① 제복 착용(제복 공급 대상 및 복제 등), ② 여객안전관리 승무원 승선 운영(대상선박 및 자격요건) ③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요건 강화(적성심사 주기, 심사항목 등)

- 대형 여객선(5천톤 이상) 선장의 승무 기준을 상향(2급→1급)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 추진('15. 3월)

- 자질·능력이 검증된 선원의 승선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제 기준(STCW 협약)에 부합하는 면허 및 교육체계 마련 ('16 선박직원법 전부 개정 추진)

- (면허) 업종·직무 특성 구분없이 단순 등급기준으로 구성된 해기사 면허체계를 업종(여객/화물 등)·직무별 면허로 개편

- (교육) 면허 승급시(부원→운항급→관리급) 및 선장 업무수행 전에는 소정의 정규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제도화

○ 선원의 처우 개선을 통한 우수 선원 확보

- 선원의 근로부담 경감을 통하여 과로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원 최소 승무정원 현실화 및 예비원 확보 의무 확대
 - * 선원 최소 승무정원 현실화는 선주·노조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15년)하고 선원법 및 선원업무처리지침 개정 추진('16년)
 - ** 내항선에 대한 예비원 확대를 위해 선원법을 개정('15.1.6)하였으며 선원법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 추진('15.6월)
- 내항 여객선에 우수 선원 공급을 위해 승선근무예비역의 신규 배정을 추진(병무청 협의/병역법 시행령 개정 필요) 해기사 면허 소지 해군 전역자 취업 지원
 - * 해군본부·한국선주협회와 '15년 추진 방안 협의('15. 2월), 선원취업 재교육 과정 신설('15. 상반기·하반기 각 1회/해양수산연수원)
- 선원의 퇴직금 채권 보장 및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노·사 중심의 선원퇴직연금 제도 도입 유도
 - * 선원 퇴직연금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선원법 개정('15년말)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제도 시행('16년)

○ 선박·인명 구조 의무 위반 선장, 해원에 대한 처벌 강화

- 선장 및 해원이 선박 위험 시 및 선박 충돌 시 구조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 강화(선원법 개정 완료, '15.1. 6 공포)
- 세월호 사고 후속대책* 추진을 위하여 개정한 선원법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15.6)
 - * 여객선 안전관리 전담 승무원 승선,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요건 강화, 제복 착용 등

다. 추진일정

연도별	분기별	주요내용	장단기 구분
2014년	3/4분기		
	4/4분기	선원법·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14.12) - 선원안전교육 및 선내 비상훈련 강화	즉시 실행
2015년	1/4분기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15.3) - 여객선 선장의 승무기준 강화	1년 이내
	2/4분기	선원법 하위법령 개정('15. 6) - 선장 적성심사, 예비원 확대 등	1년 이내
	3/4분기		
	4/4분기	해기면허체계 개편방안 마련 선원법 개정(선원퇴직연금제도 근거 규정)	1년 이내
2016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선박직원법 전부 개정(해기면허체계 개편)	중장기
2017년 이후			

라. 소요예산(15년) : 해당없음

4. 선박 안전기준 및 검사 강화(해사산업기술과, 원양산업과)

가. 개요(목적)

- 선박 안전성 등 있는 합리적 개조관리체계 도입 및 원양어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전설비 강화

나. 주요내용

- 선박 개조에 따른 기술적 안전성과 함께 현실적인 선박 운항 여건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조관리체계 도입
 - 개조허가대상 강화* 및 개조허가前 관련 전문가의 자문 실시 및 여객선의 경우 복원성이 저하되는 개조 금지
 - * (현행) 선박 길이/너비/깊이/용도 변경 → (확대) 현행 + 시설(객실/구명/소방/거주설비) 변경

- 정부검사 대행권 개방 및 주요 검사정보 공유방안 추진 관련
 - 선박검사에 대한 정부검사대행권(현재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상호주의에 입각, 외국 선박검사기관에도 개방
 - 선박검사 주요 내용을 면허청 등 안전관리부서 등과 공유

- 구명설비 정비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 정비인력(관리책임자, 자체검사자, 선박탑재자)의 자격(경력)요건을 신설하고, 정비사업장이 제조업체로부터 정비능력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 관리책임자의 경력요건을 삭제하고 자격(면허)증 보유 의무화, 자격요건이 없던 자체 검사자와 선박탑재자의 자격요건(경력 5년 이상)을 신설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15년)

○ 구명조끼 내구연한 평가를 위한 조사연구 추진

- 선종, 비치기간, 비치상태 등 조건별 구명조끼 회수·성능시험을 통해 내구연한 평가방법 개발

* 연구기간/예산 : '15.5-12월 / 180백만원

○ 원양어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전설비 강화

-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 및 안전관리책임관 도입 등 선사의 책임 강화, 정부의 지도·감독 및 처벌 강화

* 원양산업발전법, 선원법, 해사안전법, 어선법 등 개정('15년)

- 베링해·남극수역 등 특정위험수역에서 생존율 제고를 위해 특수 방수복 비치 의무화, 구명장비 관리 강화

* 방수복 설비 기준 및 정비방법 등의 신설을 위해 「어선설비기준」 개정 추진('15)

다. 추진일정

연도별	분기별	주요내용	장단기 구분
2014년	4/4분기	선박안전법 개정(완료)	
2015년	1/4분기	선박안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마련	1년 이내
		원양어선 지도·감독 및 어선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1년 이내
	2/4분기	선박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 등 개정 절차 추진	1년 이내
		구명조끼 내구연한 평가 조사연구 착수	1년 이내
		원양어선 수역별·업종별 표준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6월)	1년 이내
	3/4분기	선박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1년 이내
4/4분기	구명조끼 내구연한 평가 조사연구 준공	1년 이내	

라. 소요예산(15년)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14년 실적	'15년 계획	비고*
소 계	-	180	
구명조끼 내구연한 평가 조사연구	-	180	단년도 사업

* 내역사업인 경우 내역사업명을 비고란에 표기

5. 일반인의 해양안전교육 및 체험기회 확대(해사안전정책과)

가. 개요(목적)

- 연안여객, 해양레저 등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은 증가하고 있으나 바다에서 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한 안전교육과 현장 체험기회가 부족한 실정
- 학생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해양에 특화된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비상대응 능력 배양 및 안전의식 제고로 인명사고 예방

나. 주요내용

-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운영

'14년 시범운영의 개선사항 도출 및 관계기관·단체 의견수렴을 통한 확대운영 추진

- 초·중·고등학교 교사, 해양소년단연맹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120명 양성
 - (교육내용) 해양안전 기초이론, 실습선을 이용한 선박구조, 구명설비 배치 등 현장학습, 비상 시 탈출요령, 인명구조 등 체험·실습 위주의 프로그램 구성

- (운영방안) 대상자의 연령·직급별 그룹화를 통한 교육일수 확대*, 적절한 평가시스템에 따른 강사자격·이수제 도입으로 참여 독려

* 해양안전 지식 보유 수준에 따라 2~3일 과정으로 구성

○ 양성 교육을 이수한 강사가 학교·체험학습 현장 등 방문 교육 실시

- (교육대상)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 ('15년 목표 : 6만명)
- (교육내용) 비상 시 선박 탈출요령 및 해상생존 방법, 화재 시 대응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해상 인명구조 및 구명장비 사용법 등

* 시청각교재 활용 및 실습을 통해 이해도 제고

- (활성화 방안)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신청, 강사배정 등 추진체계 마련, 교육부를 통한 프로그램 홍보,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프로그램의 강사 지원 등

○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추진

○ (예산/사업기간) 400억원(국비 300, 지방비 100억원 및 시설부지 제공) / '15~'17

총사업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공사비	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
400	지자체 현물출자	202.2	165.81	12.12	18.40	1.47

○ (체험시설) 선박운항, 침수·경사, 안전·구조장비 작동 및 탈출 체험 등 선박 승선부터 탈출, 해상생존 등 전반적인 해양안전을 체득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

- 유아포함 가족단위, 청소년(초등 4학년 이상), 일반 체험객 이용 시설 등 4등급으로 체험시설을 구분하고,
- 대상별 세부동선 및 공통 체험공간과 코스별 체험시설의 공간 배치를 고려하여 시설물 전시

< 해양안전체험관 주요 콘텐츠(안) >

시설명	주요 내용
① 여객선 생존체험	
여객선 슬라이드 탈출	· 탈출 슬라이드를 통한 퇴선체험
구명정 비상탈출	· 구명뗏목을 팽창시키고 입수하여 수중에서 탑승
해상생존	· 해상 생존기술 습득 및 익수자 구조방법 교육·실습
해양자연재난	· 인공 이안류와 쓰나미를 만들어 대피요령 등 교육·체험
② 여객선 화재·대피 및 가상 충돌·좌초사고 체험	
여객선 화재대피 체험	· 선내 비상등, 유도등을 따라 대피하는 방법 교육·체험
선박 침수·경사 체험	· 선박침수·경사 시 선내에서 갑판까지 탈출 방법 체험
여객선 화재진압 체험	· 전자식 소화기를 비치하여 실제 사용법 교육·습득
선박운항 체험	· 다양한 해양기상과 혼잡해역 항행체험 및 기상 해양사고 체험
③ 부대시설 : 체험평가 홀, 안전장비 교육장 및 해양안전 역사관	

○ 건립추진 일정(안)

- 입지선정('15.5) → 설계('15.6~12) → 건립('16~'17) → 운영('18~)

다. 추진일정

연도별	분기별	주요내용	장단기 구분
2015년	1/4분기	'15년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사업추진 방침결정 및 위탁사업 발주	즉시시행
		해양안전체험관 기본계획 수립	즉시시행
	2/4분기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운영	1년이내
		해양안전체험관 실시설계 추진	1년이내
	3/4분기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운영	1년이내
	4/4분기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운영결과 보고	1년이내
		해양안전체험관 실시설계 준공	1년이내

연도별	분기별	주요내용	장단기 구분
2016년	1/4분기	'16년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사업추진 방침결정 및 위탁사업 발주	중장기
		해양안전체험관 건축공사 착공	중장기
	2/4분기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운영	중장기
	3/4분기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운영	중장기
	4/4분기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운영결과 보고	중장기
2017년 이후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운영(계속사업)	중장기
		해양안전체험관 건축공사 준공(4/4분기)	중장기

라.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14년 실적	'15년 계획	비고*
소 계	-	1,741	
선박운송안전 확보	-	1,300	해양안전체험관
선박운송안전 확보	-	441	인적과실예방

* 내역사업인 경우 내역사업명을 비고란에 표기

6. 중대 해양사고 예방활동 강화(해사안전정책과)

가. 개요

- 「제1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12~'16년)」의 연차별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2015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 6대 분야별 안전정책*의 실행방안과 대형사고 이후 수립한 재발방지 대책**을 반영

* ① 종사자 역량 제고, ② 선박 안전성 강화, ③ 안전관리체제 고도화, ④ 교통안전환경 개선, ⑤ 국제협력 강화, ⑥ 비상대응체계 선진화

** 우이산호·캡틴반젤리스 호유류오염('14.2), 세월호침몰('14.9), 제501오룡호침몰('15.1)

나. 주요내용

- ① **(종사자 역량 제고)** 사고 주요원인인 인적오류 저감방안 도출·전파를 위한 체계적 연구개발 및 산·학·연·관 '휴 마린 세미나 정기개최(연 2회)
 - 선원의 자질 향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15.상)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어선원 안전조업 교육 실시
- ② **(선박 안전성 강화)** 어선 무선설비(VHF) 설치 확대(5톤 이상→ 2톤 이상) 및 기관실 자동소화설비, 유류절감장비 등 설치 지원(53억원)
 - 노후 원양어선에 대한 검사강화(검사항목 추가 및 상가주기 단축 등) 및 선박구조·설비의 변경개조 시 관리·감독 철저
 - 정부 선박검사 대행권 다변화 추진(~'15년말) 및 선박용 물건 우수정비사업장 지정요건 강화(검사자 경력요건 신설 및 인증제 도입)
- ③ **(안전관리체제 고도화)**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현장점검 강화 및 선종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체제 구축, 국적선 안전관리 우수등급 유지, 연안여객선 안전정보 공개 의무화('15.7)
- ④ **(교통안전 개선)** 항내 통항위해요소 발굴·해소, 불법어망·방치 폐선 제거, '안전海 클리닉'을 통한 주기적 안전수칙 개선
 - e-Navigation, e-Loran 등 선진 항법시스템 추진기반 구축, 연안해역·주요항만에 대한 정밀수로 측량 및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 ⑤ **(국제협력 강화)** 국제해사기구(IMO) 대응 전문성 제고(전문기관 지정 운영), 'IMO A그룹 이사국' 8연속 진출 추진 및 양·다자 협력* 강화
 - * 국적선 출항정지 예방, 국제해사안전정책 선도, 해적대응 및 해양사고 조사 협력 등

- ⑥ (비상대응체계 선진화) 광역·연안구조 및 방제장비 확충(헬기 1대, 방제정 1척 등),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107명, ~15.6), 해양재난 관리 선진화 방안마련 및 HNS 사고 대비·대응 기술개발

다. 추진일정

- 추진전략 과제별 연중 및 수시 추진

라.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추진기관명	'14년 실적	'15년 계획	비고
소 계	529,795	664,556	
해양수산부	377,688	426,826	
국민안전처	44,804	101,808	
기상청	4,553	6,815	
지자체	81,085	108,477	
공공기관	31,665	20,630	

* 내역사업인 경우 내역사업명을 비고란에 표기

제3장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

1. 자연재난 관리대책

1-1. 풍수해대책(항만개발과, 소득복지과, 어촌어항과, 항만운영과, 해사안전정책과, 해운정책과, 연안해운과)

가. 개요(목적)

-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선박, 항만·어항시설 및 수산물 피해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사전·사후 관리 대책 추진

나. 주요내용

(1) 예방대책

- 풍수해 대비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정비
 - 여름철 홍수기에 대비하여 재난 취약시설 집중 점검
 -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및 수산 증·양식 시설의 재난 안전관리실태 집중 점검
- 재난발생 대비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확립·유지
 - 부서별 재해대책 담당팀 구성 및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점검·확인
 - 태풍 내습 기 대비 민·관 합동모의훈련 실시
- 태풍 내습 대비 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한 안전행동요령(지침)을 개발하여 선박·항만·어업 종사자들에게 보급
- 해양수산분야 자연재난대책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연재난 업무편람 제작·배포

(2) 대비대책

○ 해양분야 여름철 재난예방 대책 추진

- 여름철 재난예방을 위한 준비체계 구축
 - * 비상연락, 유관기관 협조, 비상근무 체계 등 정비, 매뉴얼 정비 등
- 항만·어항시설 및 장비 등 안전상태 점검 및 대형공사장 등 재해 취약시설 사전 보완 조치
- 선박운항 안전관리 강화대책 강구
 - *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선박운항 통제, 계류선박에 대한 선박대피 등
- 재난방지 예방실태 현장 지도점검 실시

○ 재해취약시설 점검·정비 및 관리

- 대 상 : 관할지역내 방재시설 전수점검 실시
- 시 기 : 사전대비 기간(3~5월) 1회 이상, 재해 기간(5.15~10.15) 수시
- 후속조치 : 점검결과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은 시설관리기관의 예산으로 정비하고, 긴급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은 가용재원을 활용 우기 전까지 정비완료
 - ※ 우기 전 정비가 어려운 시설물은 비닐피복, 마대쌓기, 가배수로 설치 등 재해응급대책 강구

○ 수산분야 계절별(여름철, 겨울철) 재난대책기간 운용

- 본부 재해대책 담당 팀 및 유관기관별 사전·사후대책 추진
 - * 재난대책기간 : 여름철(5.15~10.15), 겨울철(12.1~익년 3.15)
- 사전대비사항 점검 및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및 조치결과점검
- 태풍·호우·대설 위기경보 발령단계에 따른 대책 추진 및 전파

(3) 대응대책

○ 위기경보 구분

구분	판단기준	비고
관심 (Blue)	○ 태풍 빈발 시기 ○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의 발생	○ 징후 감시활동
주의 (Yellow)	○ 태풍·호우·대설 예비특보 또는 태풍·호우·대설주의보가 발령되고 태풍·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 기상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 가동 ○ 협조체제 가동
경계 (Orange)	○ 태풍·호우·대설경보가 발령되고 태풍·호우·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 대비계획 점검
심각 (Red)	○ 태풍·호우·대설경보가 발령되고 태풍·호우·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 할 때	○ 즉각 대응태세 돌입

※ 태풍 위기경보는 상황에 따라 순차에 관계없이,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발령 가능

《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

○ 관심(Blue)

- 조치사항

- (1) 기상전망 및 해양항만상황 분석
- (2) 위기경보 「관심」 발령상황 접수 및 유관·소속기관 전파
- (3) 여름철 재난대책 사전준비
- (4)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5)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 대책반별 임무 및 역할

반별	기능 및 역할
총괄 상황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보고 및 전파 · 위기대응 계획 검토 보완 ·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의 비상연락체계 확보 ·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 비상근무 준비조치 · 소속기관 등에 재난대응 사전 조치지시 · 여객선 등 선박에 대한 실시간 기상상황 전파 · 인명피해 발생 시 구조·구급 대책 수립

항만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항 계류선박·보관화물 등 항만동정 파악 · 선박대피 및 선박입출항 통제 등 유도 · 방재물자 확보·비축 현황 파악 · 피해 항만시설 대체 인접항만 지정 운영 · 항만 내 적재화물 반출 계획 수립 및 지원
수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업 및 정박어선 상황 파악 및 전파 · 어선 대피 및 어선 입·출항 통제 유도 · 어선 및 어구·어망 피해 예방대책 수립 · 어항시설 상황 파악 및 전파 · 시·군·구 및 수협 기관과의 업무연락 · 수산 관련 의료·복구·보상지원업무 지원
양식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양식 시설 예찰 및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닻, 부자, 수하연 결속상태 보수·보강 - 노후시설 대체 및 시설보강 · 피해예방을 위한 어업인 지도 계몽 교육 실시 · 시·군·구 및 수협 기관과의 업무연락 · 수산 관련 의료·복구·보상지원업무 지원
해양 환경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오염방제자재 비축·운영 준비 · 방제대비 유관부서·업체간 협력체계 구축
복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 및 보상협의 업무 총괄 · 사고수습기관과의 업무협조 · 현장 긴급복구 업무지원 · 피해경감 및 2차사고 예방조치 지원 · 의료지원 업무 총괄 · 의료지원 지휘 · 사상자 후송 및 응급조치 지원 · 인명구조 및 구호지원 · 사망, 부상자 조치사항 파악 · 대외협력 업무 총괄 · 대외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영사업무포함) · 사고관련자의 수습업무지원(영사업무포함) · 구조·구난 기관 등과의 지원 협조(국외)

○ 주의(Yellow)

- 조치사항

- (1) 기상상황 및 특보 등 상황판단
- (2) 해양수산 재난 상황실 운영(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실시)
- (2) 위기경보 「주의」 발령상황 접수 및 유관·소속기관 전파
- (3) 유관기관 대처상황 확인
- (4) 항만별 재난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강화 및 상황 점검
- (5)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점검·확인
- (6) 재해취약시설 및 수해우려지역 수방대책 추진 점검

- 대책반별 임무 및 역할

반 별	기능 및 역할
총괄 상황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비상근무체제 가동 · 재난상황 관련 대응 상황판단 ·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의 비상연락체계 강화 ·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 등 대응상황 파악 · 소속기관 등에 재난대응 조치 전파
항만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 내 재박선박 및 체화화물 안전상태 확인 · 항계 내 대기선박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 · 선박입출항 통제 및 재해 우려항만 선박대피 조치
수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진행 사항, 어선 및 어구·어망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 조치 지시 · 어선 출항금지 및 출어선 신속대피 지시 · 소형어선 육상안전지대 인양결박 · 지자체 및 유관기관별 재난대처상황 점검
양식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어장 예찰 및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면가두리 등 어류 양식시설의 보호망 설치 - 제방, 호안 등 사전점검 보수 · 양식물 조기수확 및 철거 가능한 시설물은 육지인양 또는 안전지대로 대피 지시
해양 환경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오염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유지
복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시설·장비 및 시공현장 재해방지 활동 강화 · 어선 및 각종 선박 방파제 계류 금지 조치 · 공사 중인 어항의 경우 보강자재로 임시 보강 후 장비 및 인력 대피

○ 경 계 (Orange)

- 조치사항

- (1) 기상특보, 강우량, 수위 및 저수량 파악
- (2) 위기경보 「경계」 발령상황 접수 및 유관·소속기관 전파
- (3) 기상특보에 따른 행정관서 조치사항 관리
- (4) 소속기관, 산하기관 등 비상근무 강화지시
- (5) 피해 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 (6) 피해발생시 조치계획 점검
- (7)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비상근무 강화지시/요청
- (8)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대처상황 점검

- 대책반별 임무 및 역할

반 별	기능 및 역할
총괄 상황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진로를 감안한 대응계획 마련 시행 · 태풍진로에 따른 항만별 비상근무체제 운영 · 지방소속 및 유관단체별 비상 대응상황 점검
항만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피해 예방을 위한 선박운항 통제 강화
수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응급조치 지시 · 어항내 어선 안전계선 및 안전지대 이동 대피 지시 · 지자체 및 유관기관별 재난대처사항 점검 · 어선 및 어구·어망 피해 복구대책 추진 지시
양식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발생 등 기상특보를 양식어업인에게 신속 전달하고 어장예찰 및 시설물 관리 강화 · 양식 시설 및 양식 생물 보호 조치 · 태풍·호우피해 빈발지역에 대한 양식시설물 보강 강화
해양 환경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오염대비 현장점검 등 안전조치 강화
복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시설·장비 및 항만공사현장 등 안전강화 조치 · 항만·어항공사현장 비상근무체제 운영 · 해상 장비 및 어항공사현장 등 안전 강화 조치

○ 심 각(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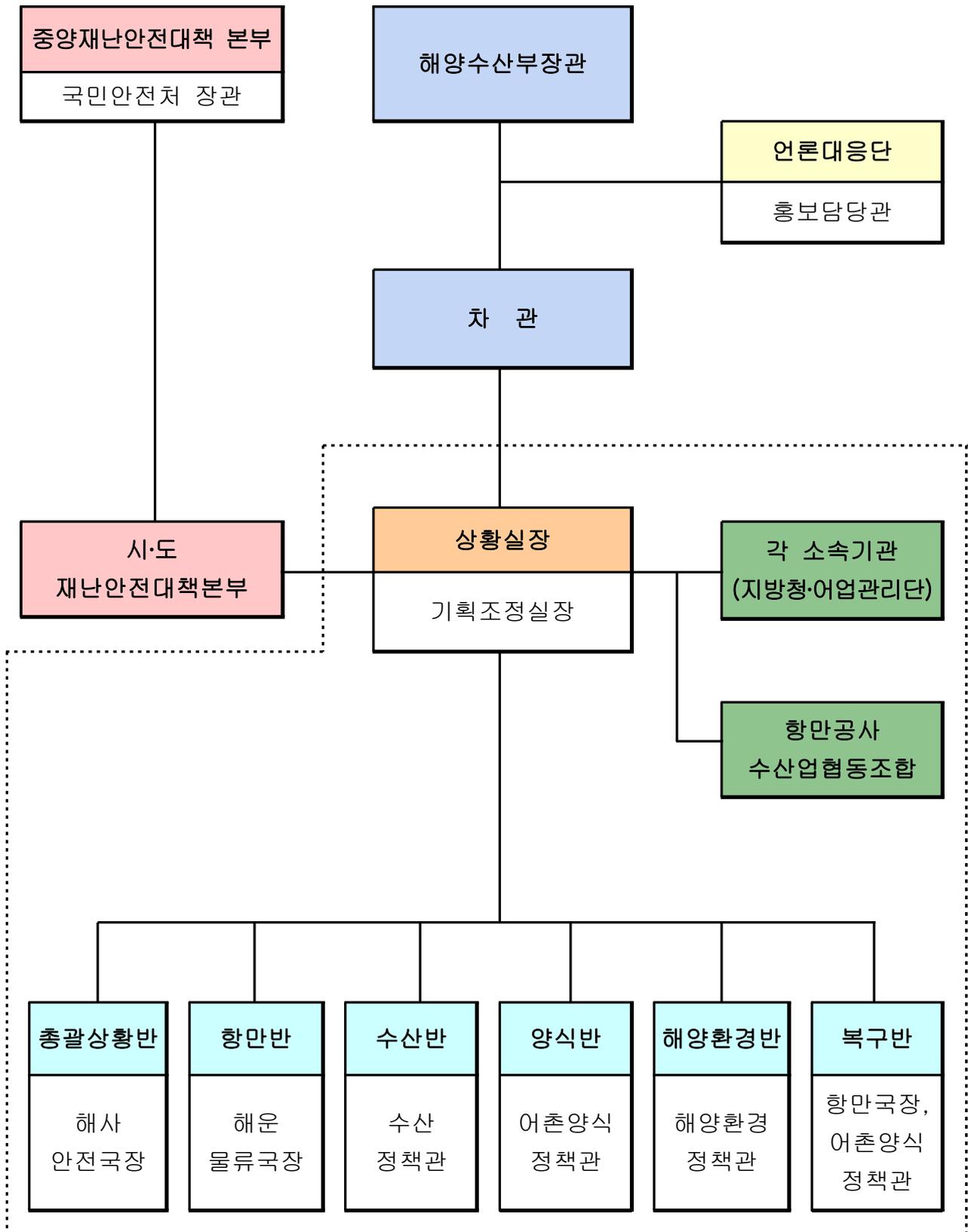
- 조치사항

- (1) 소속기관·산하기관 등에 비상근무 강화지시
- (2) 위기경보 「심각」 발령상황 접수 및 유관·소속기관 전파
- (3) 조치사항 이행지시 및 확인
- (4) 피해 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 (5) 해양분야 피해발생 상황 파악 및 긴급대응 조치
- (6)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비상근무 강화지시/요청
- (7)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대처상황 점검
- (8) 대국민 홍보강화(어업관련 시설 안전관리 집중홍보)

- 대책반별 임무 및 역할

반 별	기능 및 역할
총괄 상황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비상근무 체제 강화 · 분야별 재난피해상황 취합·보고 · 상황근무 강화 조치 이행 · 피해조사반 구성·운영 · 피해상황 파악 및 긴급복구를 위한 협력체계 가동 · 해양분야 종사자에 대한 재난 예·경보 전파 · 인명피해 발생 시 구조·구급 대책 운영
항만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 내 선박, 화물, 시설장비 등 안전강화 조치 · 선박 및 항만시설 등 피해에 대한 응급조치 · 대형 선박피해 발생 시 유관기관 협력조치 이행
수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 및 어망·어구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조치 지시 · 어항 내 어선에 대한 안전 강화 조치 · 지자체 및 유관기관 비상근무 강화 지시 · 어선 및 어구·어망 피해 복구대책 추진 지시
양식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 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조치 지시 · 양식시설 피해 복구대책 추진 지시
해양 환경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오염대비 현장점검 등 안전조치 지속강화 · 유조선 유류사고 시 국제기구(IOPC Fund)에 통보
복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시설물 등 긴급 복구를 위한 대책수립 · 항만시설·장비 및 공사현장 등 피해 응급조치 · 항로표지 등 항해지원 시설 긴급 복구계획 수립 · 방재물자 긴급 반출·지원 · 어항시설 피해 상황 파악 및 응급조치 지시 · 어항시설 피해 복구대책 추진 지시

○ 상황보고 체계도(해양수산부)



※ 각 반별 인력배치는 실·국 단위로 구성·운영

(4) 복구대책

- 피해상황 및 응급복구실태 점검
 - 중앙재난안전본부 등을 통한 피해상황 점검
 - 피해상황별 대처상황 및 응급복구실태 파악
- 유관기관 지원체계 가동
 - 피해발생시 신속한 인력·장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조
 - 유관기관에 소관시설물 피해방지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자원 동원체계 가동 및 자원확보 요청

다. 추진체계 및 일정

- 재해취약시설 점검·정비 및 관리 : '15.3~10월
 -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수산 증·양식 시설의 재난안전 관리실태 집중 점검 및 개선 등
- 재난발생 대비 민·관 합동모의훈련 실시 : '15.5월
- 태풍 내습 비상대책반 운영계획 마련 및 운영 : '15.7~10월

라.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14년 실적	'15년 계획	비고*
소 계	7,334	4,785	
항만시설 안전점검	7,334	4,785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내역사업인 경우 내역사업명을 비고란에 표기

1-2. 지진·해일 대책(항만개발과, 소득복지과, 어촌어항과, 항만운영과, 해운정책과, 연안해운과)

가. 개요(목적)

- 지진·해일 대비 피해저감을 위한 내진설계기준 설정, 교육·훈련, 대국민 홍보 및 신속한 초동 대응태세를 확립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 피해 형태

구 분		1차 피해	2차 피해
지진	지반	지반 변형/붕괴/액상화	하역 및 항만운영시설 2차 붕괴
		매 물	인명피해, 항만운영 마비
	시설	하역시설 전도/붕괴	인명피해, 항만운영 마비
		항만시설 파괴	인명피해, 항만운영 마비
		위험물 보관시설 파괴	위험물 중독, 오염
		항만(어항) 공사현장 피해	인명피해, 공사 중단
		어항시설 파괴	인명피해, 어항운영 마비
화 재	시설물 화재 피해 및 사상자 발생		
지진해일	침수, 붕괴	항만시설 붕괴, 부두 적재화물 침수, 선박 침몰 및 인명피해	

나. 주요내용

(1) 예방대책

- 지진상황 신속파악 및 관련기관 전파
 - 소속·유관기관, 지자체, 지역주민 등에 기상청의 지진상황 신속 전파 및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 취약시설물 및 화재예방 시설물 등 점검·정비 강화
 - 다중이용시설(여객터미널 등) 및 항만시설 등에 대한 지진발생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 화재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소방계획 수립 추진
- 지진재난 위기대응 표준행동요령 작성·배포
 - 재난관리 책임기관별로 지진재난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 결정체계 및 위기경보체계 등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규정
- 지진재난 대비 민·관 합동모의훈련 실시

(2) 대비대책

- 응급 대응체제 정비
 - 담당직원의 비상소집체제 정비 및 정보수집 전달수단 확보
 - 응급활동을 위한 표준행동요령 숙지, 정기적인 훈련실시, 자재 및 장비의 사용방법 숙지
 - 응급 복구활동을 위한 관계기관 상호지원 강화
- 재난 예·경보 및 정보의 수집·연락
 - 방재기관과 정보전달 경로의 다중화 및 연락체제 확립
 - 휴대폰 메시지, 동영상 등 송수신 체제 적극 활용
 - 지도선, 차량 등 다양한 정보수집을 위한 체제 정비
 - 신속·정확한 재난정보의 수집·연락체제 정비
- 대규모 해저 지진대책
 - 지진해일 위험예상지역 구조물, 시설 등 정비 및 대피 장소, 대피로 정비
 - 신속한 지진예보를 전달을 위해 통신체제, 시설 및 설비의 확충
 - 피해 예상지역 주민 및 어선 등에 대한 위험성 홍보
- 항만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항만·어항시설물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 실시
 - 내진성능 미 확보 항만·어항시설물에 대해 세부적인 보강방안 수립
 - 지진에 취약한 항만·어항시설물 내진보강을 통해 지진에 대한 시설물 안전성 확보

(3) 대응대책

○ 재난발생 직전의 대책

- 피해발생에 대한 조사보고체제 확립
 - * 재난관리책임기관 →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 →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관련부처 전파)
- 대규모 피해발생시 해양수산부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기상상황 및 재난상황 전달
- 방재관련 유관기관과 홍보협조 강화

○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응급조치 확인 및 점검

- 피해예상 어업 시설물(양식장 등) 점검 및 안전조치
- 배수갑문 외측의 선박 안전대피 및 내수위 조절
- 공사장 장비 및 인력 등 안전지대 신속대피 조치
- 항포·구내 접안중인 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한 어선 입·출항 통제 및 충돌방지를 위한 조치
- 양식물 사전채취 및 양식어류 도피를 위한 보호망 보강 등

○ 재난발생 직후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확립

- 소속·유관기관, 지자체 등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업무협조체제 유지
 - * 비상연락망 정비확인 및 피해사항 접수·통보
- 소관시설물 지진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원협조 요청

○ 2차 재난 방지대책 강구

- 여진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붕괴에 대비 시설물 안전도 검사 등 2차 피해 유발요소에 대한 점검과 피해방지 대책 강구
- 붕괴된 기반시설에 대한 긴급 지원체제 가동으로 응급조치, 복구사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지원
- 이상고조, 파랑 및 조위의 변화에 의한 침수방지를 위하여 해안 보전시설을 점검, 재난이 우려될 경우 신속 대피조치
- 폭발, 가스누출 및 화재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4) 복구대책

- 신속한 피해조사
 -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지진피해조사단 구성 지원
- 복구지원
 - 관할기관장 및 시설관리자는 피해확산 억제를 위한 응급조치
 - 이재민 구호, 재난복구사업, 기타 재난대책을 위한 지원 「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지원
 - 지진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조치 등 긴급복구 추진
 - 인근 공사장의 장비 및 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 응급복구
 - 시설복구는 복구계획에 의거 소속기관장 책임하에 추진
 - 재해복구는 신속 및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추진
- 민간참여 지원 및 협조
 - 어업 관련 기업·단체의 참여 접수 및 지원 협조

다. 추진체계 및 일정

- 취약시설물 및 화재예방 시설물 등 점검·정비 : 연중
 - 다중이용시설(여객터미널 등), 항만·어항 시설 점검
- 지진재난 대비 민·관 합동모의훈련 실시 : '15.5월
- 지진 재난 응급 대응체제 정비 : 연중
 - 직원 비상소집체제, 자체 및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등
- 항만시설 내진성능 평가 결과에 따라 보강사업 지속 추진

라.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14년 실적	'15년 계획	비고*
소 계	8,888	8,829	
항만 내진 보강	8,888	8,829	

* 내역사업인 경우 내역사업명을 비고란에 표기

1-3.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해양영도과)

가. 개요(목적)

-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슈퍼태풍의 발생,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증가 예상
- 해양재해의 선제적 대응과 안전하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공간 창출에 필요한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관리·운영으로 자연재해 사전 대비

나. 주요내용

- 조위관측소 등 국가해양관측망 구축(140개소) 및 해양예보
-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등 국가해양관측망 관리·운영

다. 추진일정(15년)

- 광역해수유동관측소(7개소) 및 해양관측부이(2개) 구축
-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등 국가해양관측망(110개소) 관리·운영
- * 관할해역 내 국가해양관측망을 2020년까지 140개소로 확대 구축 운영 예정

라. 소요예산(15년)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14년 실적	'15년 계획	비고*
소 계	39,573	40,524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2,943	5,000	10개소 증설
국가해양관측망 관리·운영	13,830	16,524	110개소
접적해역 정밀조사	15,000	15,000	799km ² ->1,044km ²
기후변화 적응 해양기반구축	7,300	3,500	
해양정보 활용시스템 개발·연구	500	500	

* 내역사업인 경우 내역사업명을 비교란에 표기

1-4. 적조대책(양식산업과)

가. 개요(목적)

- '90년대 중반이후 주요 양식지역인 전남·경남을 중심으로 양식 수산물에 피해 발생
 - * 피해액 : ('95) 764 → ('03) 215 → ('05) 11.4 → ('06) 0.7 → ('07) 115억원
('08~'11) 피해 미발생 →('12) 44 →('13) 247억원→('14) 74억원
- '14년은 태풍과 흐린 날씨로 늦게 출현하여 8월말 수온상승으로 증가하다가 9월에 급속하게 확산되어 남·동해안에 장기간 정체
 - 9월 이후 풍향에 따라 밀집과 분산을 반복하면서 예측이 어려운 게릴라성 출현 양상을 보여 방제 애로
- 적조발생에 의한 어업피해 사전예방 및 피해 최소화
 - 적조예찰·예보 강화 및 체계적 대응
 - 민관 협력을 통한 적조방제 및 현장 활용형 사업 실시

나. 주요내용

(1) 예방대책

- 적조방제 동원체제 구축
 - 방제선단 구성·운영
 - 행정선, 방제선, 해경정, 어선 등 동원 가능선박을 사전 지정
 - 방제인력 및 장비 확보
 -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명령서 발부 등 조치
 - 군부대, 소방서, 수산관련 단체 등 가용장비 전수 조사 및 확보

□ 방제장비 점검 및 동원 계획

- 양식어장 입식량 및 방제장비 일제점검 실시
 - 지자체와 합동으로 해상가두리 및 육상양식어장 사육어류와 보유하고 있는 적조 예방·방제 장비 전수 조사 실시
 - 적조피해 우려해역의 양식중인 성어에 대하여는 출하유도 및 적정밀도 양식 지도를 실시
 - 유해성적조 발생 전 양식어장에 방제장비 구비 및 어장별 황토 사전배정으로 방제 철저

- 양질의 황토 확보 및 구제물질에 대한 현장적용 실험
 - 황토 토취장 및 예정지에 대한 성분분석 철저
 - 지자체 합동 집중방제 체제 구축 및 황토적치장 확보
 - 조류·물때, 어장의 위치, 확산(이동)경로 등을 분석하여 해역별로 체계적인 방제전략 수립 시행
 - 2014년도 적합 판정을 받은 4개 적조구제물질에 대한 현장적용 실험 실시(미생물추출물, 황토혼합물, 陶石혼합물, 머드혼합물)

(2) 대비대책

□ 적조예찰 및 방제체제

- 예찰활동
 - 유해적조 발생 해역의 환경 동태 조사(6~9월)
 - 적조상설 감시망 지정(102개소) 운영(3~11월)
 - 전국연안의 적조발생 우려해역, 다발해역을 중심으로 정기예찰
 - 유해성 적조 발생해역 시험조사선, 기술지도선 상주배치(7~10월)

- 육·해상 예찰반 편성 운영(4~10월)
 - 전국연안 육상에 예찰지점을 지정하고, 지자체공무원 예찰실시

- 해역별 적조예찰 담당공무원 지정 운영
 - 적조발견 시 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 해상 및 항공예찰 등 기동예찰반 편성 운영
 - 적조발생 및 확산 피해우려 해역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 기동예찰반을 편성, 수시예찰 실시
 - 유관기관(시·도, 시·군, 해경 등)에서는 선박, 헬기 등을 지원받아 해역 정기예찰 및 항공 광역예찰 실시
- 인공위성을 이용한 적조원격 탐사
 - 해양수색의 변화, 표층수온, 클로로필-a, 탁도, 수색 등의 실시간분포정보를 분석
 - 수과원에서는 위성 제공자료와 육·해상 정보자료를 분석하여 적조예보에 활용
- 적조정보 및 적조방제 D/B 구축
 - 수과원과 수산사무소 간 적조예찰 등 정보의 신속 공유
 - 적조예찰 및 확산 정보의 지자체·어업인 제공
- 민·관 협력 예찰체제 구축(지자체별 자체 운영)
 - 필요 시 어촌계·마을단위로 명예감시원 위촉
 - 여객선 선장 및 어선 어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 적조 정보상황실 운용
 - 적조 정보제공 시스템
 - 적조피해 우려 품종 양식어업권자에게 E-mail 송부
 - 자동응답전화(ARS), 적조정보 자동 송·수신 운용(190개 기관)
 - 인터넷(<http://www.nfrdi.re.kr>)으로 적조정보 신속제공
 -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지역방송 등 적조정보 실시간 제공
 - 기술지도 및 방문요청 시 직접 현장지도(수산기술사업소 등)

(3) 대응대책

□ 적조발생 단계별 · 기관별 행동 요령

단계별	수산과학원	수산기술사업소	시·도(시·군)
적조생물출현 주의보 (10개체/ml 이상 출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조 조사·예보 ○ 적조정보망 운용 ○ 적조방제기술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조에찰반 운용 및 적조모니터링 ○ 명예감시원 운용 ○ 적조피해방지 교육 ○ 적조대처요령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조대책위원회 운용 ○ 총동원체제 확립 ○ 적조제거물질 확보 ○ 적조방지시설 점검
주의보 (100개체/m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조상황 전파 ○ 유관기관 합동예찰반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조상황 전파 ○ 적조에찰 강화 ○ 양식장 피해예방 지도 강화(조기판매, 먹이량, 밀도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장비 총동원 ○ 적조방제 및 지휘 ○ 유관기관 협조유지
경보 (1,000개체/m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조상황 전파 ○ 유관기관 합동예찰반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조에찰 강화 및 상황 전파 ○ 양식장 피해예방 지도 ○ 적조방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장비 총동원 ○ 적조방제 및 지휘 ○ 유관기관 공조유지
피해 발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조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조사 지원 ○ 복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피해조사(주관) ○ 복구계획 수립

□ 적조관리 준비단계

- 적조발생전 단계(수과원, 시·도, 시·군, 수협, 어업인)
 - 적조 예보 상황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어업인)
 - 유관기관 및 관련 홈페이지에서 발송하는 적조발생 동태 상황을 예의주시(어업인)
 - 사육조내 양식생물 밀도를 가급적 낮게 분산수용(어업인)
 - 적조발생전 양식어장의 성어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기출하(어업인)
 - 정상적으로 먹이 급여 및 예찰활동 지속 실시(어업인)
 - 공기 공급장치(공기발생기) 추가 증설(어업인)
 - 충분한 액화산소기 시설 구비(어업인)
 - 고압여과기, 순환여과시스템, 지하해수 등의 점검(어업인)
 - 전복양식장의 경우 배수를 통한 사육조 바닥의 찌꺼기 완전히 제거(어업인)
 - 적조발생에 대비한 장비 및 시설물 점검(어업인)

- 적조예찰 및 동태파악 등 적조 조기발견 및 감시체제 운용 (수과원, 지자체)
 - 적조동태를 유관기관 및 자동응답기를 통하여 어업인에게 홍보 (수과원)
 - 적조피해 예방 및 어장관리요령 등에 대한 어업인 홍보 및 교육(수과원, 지자체)
 - 적조피해방지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시·도, 시·군)
 - 황토확보 및 집하장소, 살포요령 등 홍보(시·군)
 - 기동지원반을 편성운영(주관 : 시·군, 수산사무소, 수협)
 - 육상수조식 및 해상가두리시설 등 적조피해 방지시설의 구비 상태 점검 및 지도(시·군, 수산사무소 등)
- 유해종 출현 및 적조 발견시(수과원, 해경, 시·도, 시·군, 수협, 어업인)
- 헬기에 의한 항공감시등 적조감시망을 가동, 적조 변동상황을 매일 감시(주관 : 수과원, 협조 : 해경, 시·도, 시·군, 수협)
 - 적조발견시 즉시 계통보고 및 어업인 통보(수산기술사업소 등, 수과원, 시·도, 시·군, 어업인)
 - 대학 적조생물분류 전문가와 협조체제 구축
 - 적조생물 독성 및 농도별 폐사 여부 등 조사
 - 조사결과를 수시 시·도, 시·군, 수협, 기타 유관기관에 통보
 - 자동응답기, 수산기술사업소, 시·군, 수협, 보도기관을 통해 홍보 실시
- 경계단계(적조주의보 발령시)
- 관련기관(수과원, 수산기술사업소 등, 시·도, 시·군, 수협)
- 발령해역 및 확산우려해역에 어촌지도공무원 기동배치, 적조 동태 파악 및 어업인 지도(수과원, 수산기술사업소 등)

- 선박기동예찰 및 항공감시를 통해 적조확산 및 이동상황을 파악(주관 : 수과원, 협조 : 해경, 시·도, 시·군, 수협)
- 어촌계, 수산기술사업소 등, 시·군, 수협등 유관기관에 신속 통보
- 적조대책위원회를 소집,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 총동원에 대비 (주관 : 시·도, 시·군, 협조 : 수과원, 해경, 지방환경청 등)
 - 유관기관간의 협조사항 및 기관별 역할 점검
 - 유관기관 합동 기동예찰 및 방제대책 점검
 - 동원이 가능한 인력 및 장비시설 점검, 즉시 동원태세 완비
- 어업인, 유관기관등 합동으로 황토살포 등 적조방제 실시
- 양식장 관리 지도 강화
 - 양식어장 주변의 수층별 적조생물 분포 파악 및 지도(수산기술사업소 등)
 - 양식생물의 예비수조 등 분산수용, 시설확보 및 시설분산준비 (시·군, 수산기술사업소 등)
 - 상품가치가 있는 것은 선별 출하 지도(시·군, 수산기술사업소 등)
 - 필요시 황토살포 및 바닥갈이로 적조생물구제 조치(시·군, 수협)
- 어장관리요령에 따라 지자체공무원, 연구원, 유관기관 인력을 총동원, 피해방지 지도(수과원, 시·군)
- 육상수조식 양식장 관리
 - 취수구 주변 적조생물을 수층별로 채집 적조농도가 낮은 층에서 취수
 - 해수 여과시설, 산소공급시설 등 장비점검 및 가동
 - 액화산소를 충분히 비치하여 취수 중단에 대비
 - 사료공급량 조절 또는 예비수조에 양식생물 분산
 - 적조생물 농도에 따라 환수중단 또는 환수량 조절
 - 예비사육수 최대한 비축
 - 야간에는 가능한 취수중단, 액화산소 공급

- 해상가두리식, 수하식 양식장 관리
 - 소규모 적조시 어장유입 전에 황토살포
 - 이동가능한 양식물 및 시설을 안전해역으로 이동
 - 적조생물의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시 시설물 수층 조절
 - 사료공급량 조절 또는 중단
 - 선박(스크류)활용 적조생물 분산 및 유입방지

□ 비상단계(적조경보 발령시)

- 관련기관(수과원, 해경, 시·도, 시·군, 수협)
 - 어업인, 수협, 연구소, 시·도, 시·군 등 유관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 피해최소화(주관: 시·도, 시·군, 협조: 수과원, 해경, 수협 등)
 - 적조확산범위, 진행상황, 영향권 등을 매일 파악 통보(수과원)
 - TV, 라디오, 신문 등 홍보매체 등을 이용, 적조생물밀도, 진행 상황, 피해상황, 어장 관리요령 등을 계속보도 및 홍보지도 (주관: 수과원, 협조: 시·도, 수협)
 - 어장관리요령에 따른 피해방지 지도(주관 : 수과원, 협조 : 시·군, 수협)
- 육상 수조식 양식장 관리
 - 사육수 공급 조절
 - 여과시설(제거기, 간이여과시설, 필터 등)을 통해서만 환수
 - 여과시설이 없는 경우 환수중단 또는 환수량 조절
 - 깊은 수심 또는 적조생물 밀도가 낮은 수층의 물 환수
 - 야간에는 환수를 억제하는 대신 액화산소 공급 최대 활용
 - 각 수조에 순환펌프나 수중펌프 등을 설치하여 자체순환과 낙차 등을 이용한 산소 보충
 - 먹이 공급 조절
 - 취수장주변 유해성적조 발견시 먹이 공급중단 또는 급이량조절

- 가능한 어장주변 적조유입전 오전 6~7시경 먹이 공급 완료
- 적조로 장기간 절식할 경우 어체 약화로 어병 발생률이 높으므로 사료에 영양제와 혼합 급이
- 어류사육밀도를 낮추고 예비수조에 분산수용

- 해상 가두리, 수하식 양식장 관리
 - 선박 등을 활용 양식장주변 적조생물 분산 및 산소주입
 - 유해성적조 어장유입시 먹이공급 중단
 - 적조생물 밀도에 따라 사료 공급조절
 - 중간종묘 등 시설이용 가능시 안전수역으로 이동, 또는 육상 수조 등으로 양식물 이동·수용
 - 수심조절 가능시설은 5m이심 수층으로 침하 등 수심조절
 - 주간 적조생물 부상시간에 황토 살포
 - 어류, 우렁쉥이 등 육상 종묘배양장의 유희시설에 임시수용

(4) 복구대책

□ 피해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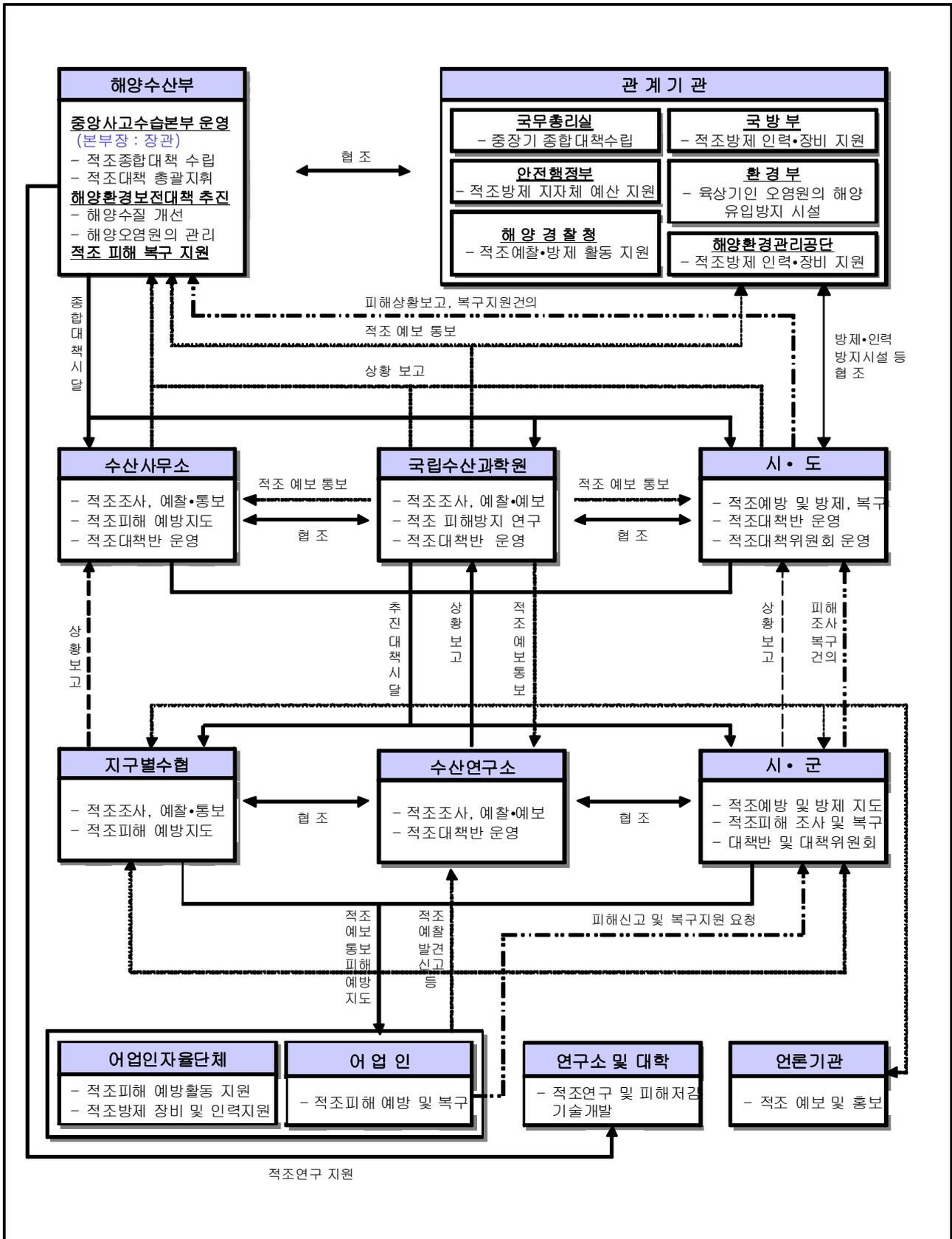
- 합동피해조사반 구성·운영(시·도)
- 주 관 : 시·군·구
- 참여기관 : 수산연구소, 수협, 어업인 등
- 역 할 : 피해발생시 합동조사후 폐사어 수거처리 조치

□ 피해복구 지원체제 확립

- 업무체계 : 복구실시 지침(해양수산부) → 복구계획서(시·도) → 복구비 배정(해양수산부)
- 지원내용 : 농어업재해대책법 관계규정, 어업재해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요령
 - 직접지원 : 재난지원금
 - 간접지원 :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다. 추진체계

□ 중앙/지방 적조대책본부 기본 체계도



라.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14년 실적	'15년 계획	비고
소 계	6,014	7,514	
적조방제	2,500	2,500	위해생물구제사업
적조대응 이동식가두리시설	1,764	1,764	적조피해예방사업
품종변경에 따른 시설지원	1,750	750	적조피해예방사업
어장재배치	-	1,000	적조피해예방사업
방제장비보관시설	-	1,500	적조피해예방사업

* 내역사업인 경우 내역사업명을 비고란에 표기

1-5. 조수대책(해양영토과)

가. 개요(목적)

-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하는 조수 재해에 대비한 범정부적 위기 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 및 기관별 활동방향을 규정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조수 재해에 대한 위기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함

조수란 연안이나 하구에서 조석¹⁾, 기상해일²⁾, 너울성파랑³⁾ 등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이상 상승하거나, 이안류⁴⁾가 발생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1) 조석이란 지구, 달, 태양 등에 의해 일어나는 해면의 주기적인 승강(昇降)현상
- 2) 기상해일이란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저기압에 의해 발생한 해상의 파동이 연안에서 증폭되는 현상(주로 서해에서 발생)
- 3) 너울성파랑이란 먼 바다에서 지역적 기상특성(강한 기압골)에 의해 발생되어 전파되는 장주기의 고파랑(주로 동해에서 발생)
- 4) 이안류란 일정하지 않게 해안으로 전파되는 파랑에너지에 의해 해안에서 바다로 빠르게 이동하는 폭이 좁은 해수의 흐름

나. 주요내용

(1) 예방대책

- 조수 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지역별 취약지역 평가, 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정비계획(방재 계획, 대피경로/대피소 확보 등) 수립
- 조수 재해 감시 및 사전차단 강화
 - 고조 정보(3단계) 및 이안류 정보(4단계) 설정 고도화
 - 해수면 관측 및 예·경보시스템 구축·운영
 - 이안류 관측 및 예·경보시스템 구축·운영
 - 기상해일, 너울성과랑 예·경보시스템 개발 및 현업적용 방안 마련
 - 조수를 포함한 실시간 연안재해취약성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
 - 조수 재해 취약시설물 및 취약인원 점검 철저
- 주민 및 해양안전 종사자의 안전역량 강화
 - 대피경로, 대피소 정보 사전교육 강화
 - 재해발생시 주민행동요령 수립 및 교육 철저

(2) 대비대책

- 위기상황에 따라 대응반 가동 등 초등대응 강화
 - 비상 상황근무체계 점검
 - 조수재해 관련 정보 전파
 - 유관기관의 조치사항 점검, 확인
 - 예찰활동 강화로 방재시설물, 대형 공사장 등 위험유발 시설물의 점검으로 재해 위험요소의 제거
 - 선박·어선의 대피, 출항 통제 등 실시
 - 유관기관간 비상 통신망 구축, 점검

- 유관기관간 신속한 상황보고, 공조·협력체제 구축·유지
 - 조수 재해 관련 유관기관간 역할분담
 - 조수관련 재해정보 전달 및 감시·신고·전파체제 유지
- 긴급 지원체제 구축 및 현장지휘체제 확립
 -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유지 및 긴급 지원체제 구축, 훈련
 - 파견근무자 지정 및 기능별 임무 부여 등 중앙수습 지원단 구성·운영 훈련
- 조수 예·경보 및 관련재해 실시간 정보전달체제 구축·운영
 - 고조 정보(3단계) 및 이안류 정보(4단계) 종합상황실 제공 및 유관기관 전파 체제 확립
 - TV, 라디오 등을 활용한 재난 방송실시 및 정보제공 창구의 일원화
 - 인터넷, 유·무선, FAX,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 실시간 전파 체제 준비
 - 재난안전대책본부-방송사간 사전 협조체제 구축

(3) 대응대책

- 신속한 상황보고·전파
 - 조수 재해 예상 지역 경보 통보시스템 가동
 - 인터넷, 유·무선, FAX,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의 활용, 전파
- 초동대응 조치 시행 및 응급복구지원본부 설치 운용
 - 각 유관기관간의 공조로 위험구역 설정, 주민대피, 선박대피, 교통통제·제한 및 응급조치 등 신속한 초동조치 실시
 - 응급복구지원본부의 설치 및 각 기능별 활동 전개
 - 긴급지원체제의 신속 가동
- 일원화된 언론대응 및 신속·정확·홍보로 대국민 신뢰확보
 - 재난방송 활용 대국민 홍보 강화
 - 언론·홍보 대응팀 가동 및 취재활동 지원

(4) 복구대책

○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

- 피해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 편성·운영
- 복구대책은 피해유형별로 소관부처에서 수립, 지원 추진
- 체계적인 복구계획의 수립, 추진
- 신속한 복구를 위한 행·재정적 절차 등 제도 개선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 현장 복구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협조 요청
- 수습조치는 재난관리체계에 준하여 처리

○ 피해 원인조사, 기록, 평가 및 사후활용

- 피해 원인조사
- 피해 기록 및 평가 결과 활용
- 피해사례의 영상, 기록 등 자료의 보관
- 조수 재해 대응활동의 평가 및 결과 전파

다. 주요 추진일정

○ 조수 표준매뉴얼 제정('15.4)

* 필요시 풍수해 매뉴얼과의 중복 검토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와 업무협약추진

○ 조수 표준매뉴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수행('15. 5~12)

* 조수 유관기관별 조수 실무매뉴얼 및 행동매뉴얼 작성

라.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14년 실적	'15년 계획	비고
소 계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	2,382	4,000	· 연안이상현상 예경보체계 개발연구 ·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

* 내역사업인 경우 내역사업명을 비고란에 표기

1-6. 연안침식 방지대책(연안계획과)

가. 개요(목적)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 추진으로 자연재해 예방

나. 주요내용

- (안전예산사업) 전국 370개소 1조 9,844억원
 - 변경계획(2015~2019) : 151개소 9,480억원(전체의 48% 수준)
- (관련사업) 연안보전사업, 친수연안조성사업
- (제도) 연안관리법 제21조 및 제25조에 의거 시행
- (정책)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2015~2019) 수립 및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4-105호, '2014.10.2)
- (기대효과) 연안의 안전성 및 쾌적성 확보를 통한 연안국토의 질 제고와 연안의 부가가치 창출

다.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전략 과제별 연중 및 수시 추진

라.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14년 실적	'15년 계획	비고*
소 계	86,323	84,439	
연안정비	49,867	52,182	
해양 및 수자원 관리	32,061	26,997	연안정비
연안정비(대산청)	4,395	5,260	

* 내역사업인 경우 내역사업명을 비고란에 표기

2. 사회재난 관리대책

2-1.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책(해양환경정책과)

가. 개요(목적)

-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수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정부차원의 신속한 사고대응과 효율적 피해지원을 위한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을 규정

나. 주요내용

(1) 예방대책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제대책본부, 지역대책본부 및 중앙·지방 관계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 해양오염피해대비 교육·훈련 및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
-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위기 수준별(관심→주의→경계→심각) 대응절차의 수립과 어장오염 응급 복구체계 확립
- 위기 경보 수준별 징후 및 부서별 예방 대책

구 분		부서별 예방 대책(조치사항)
관심 (Blue)	징후	해양오염사고 발생가능성 인지(재난가능성 예측) - 대형유조선 충돌, 침몰, 좌초사고 및 해양시설 파손 국내 내습이 가능한 태풍 또는 해일 등 자연재해 발생 - 태풍의 중심이 경계구역(25°N 북쪽, 135°E 서쪽)으로 이동
	해양수산부	대규모 해양환경오염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유관기관 공조·협력체계 구축·확인 위기징후 감시 및 평가

구 분	부서별 예방 대책(조치사항)	
	국민안전처 해양경비 안전본부	상황실 24시간 운영 국가긴급방제계획 및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수립·시행 해양오염 전문방제교육 및 민관합동훈련 실시 해양오염 방지·방제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 국가방제능력 향상을 위한 방제장비 등 확충 해양오염방제 관련 국제협력 증진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정보 관리 및 관련 기관에 제공 지휘·통신망 및 오염사고 신고접수 및 전파체계 구축 위기징후 감시 및 평가
	지방해양 수산청	해상교통관제시스템 24시간 운영 항만별 해양오염방제 기자재 확보
	항만공사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확보
주의 (Yellow)	징후	기름유출 사고발생(재난가능성 출현) 국내 내습 태풍 예비특보, 태풍주의보 발령 - 태풍의 중심이 12시간 이내에 비상구역(28°N 북쪽, 132°E 서쪽)으로 이동이 예상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 해상교통상황 모니터링 위기징후 감시 및 평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 안전본부	방제대책본부 등 국가방제체제 구축 상황실 24시간 운영 위기징후 감시 및 평가 방제 자원 등의 확보 및 긴급동원태세 유지 유관기관 공조 및 방제대응 협조 체제 강화
	지방해양 수산청	해상교통관제시스템 24시간 운영 항만별 해양오염 방제 기자재 확보
	항만공사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확보
경계 (Orange)	징후	유출된 기름 어장, 양식장 및 연안지역까지 확산 우려 (재난가능성 농후) 국내 내습 태풍 경보 발령 - 태풍이 비상구역 또는 경계구역 내에 위치하고 12시간 이내에 해상예보구역에 태풍특보가 예상될 때

구 분		부서별 예방 대책(조치사항)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 해상교통상황 모니터링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체제 구축 위기징후 감시 및 평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 안전본부	위기징후의 지속적 감시 및 평가 유관기관 공조 및 방제대응 협조체제 유지 긴급방제장비의 동원 및 방제 인력 운용 체제 유지
	지방해양 수산청	해상교통관제시스템 24시간 운영 항만별 해양오염 방제 기자재 확보
	항만공사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확보
심각 (Red)	징후	대규모 해양오염 발생(지속성 유류 100kl, 비지 속성 유류 300kl 이상 유출) 및 유출된 기름으로 해안가 100km이상 오염 발생(재난가능성 확실) 국내 내습 태풍 경보 발령 - 태풍이 비상구역 또는 경계구역 내에 위치하고 12시간 이내에 육상예보구역에 태풍특보가 예상될 때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현장상황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사고해역 해상통제 실시 및 방제조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본부 구성 검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요청 검토 현장상황 및 위기 진행 관련 언론 대응 총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 안전본부	사고 초동조치(유출방지, 유출유 확산방지 및 회수 등) 및 상황보고 국가 방제자원 동원 방제대책본부 등 국가방제체제 구축
	지방해양 항만청	항만별 해양오염방제 기자재 동원태세 유지 해상교통관제시스템 24시간 운영
	항만공사	비축 방제자재 동원 및 항만시설(관리·운영)방제 실시 항만시설(관리·운영) 방제시 수거된 폐유·폐기물 처리

(2) 대응대책 (* 심각(RED)단계와 연동하여 대응)

□ 초동조치 단계

- 위기대응 상황실 설치(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 중앙(지방)사고수습본부 운영체계 전환을 감안하여 설치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난상황 전파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해양수산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경계·심각 단계시 구성·운영
 - ※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때
 - 총 6개 반(총괄반, 상황반, 언론지원반, 현장지원반, 복구대책반, 보상지원반)으로 구성
 - 사고 수습기간 중 24시간 운영 및 2교대 근무체계를 구축하여 소관 임무 수행(방제 완료시까지 운영)
 - ※ 사고 수습상황에 따라, 기구 및 인력을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 사고수습업무의 총괄 지휘 및 종합보고, 방제·보상·피해주민 지원, 생태계 복원 등 사고수습 업무 수행
 - 필요시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및 요청

- 지역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지방해양수산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경계 단계부터 사고해역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설치 운영
 - 총 6개 반(총괄반, 상황반, 현장지원반, 복구지원반, 대외협력반, 행정지원반)으로 구성

- 사고 수습기간 중 24시간 운영 및 2교대 근무체계를 구축하여 소관 임무 수행(방제 완료시까지 운영)

※ 사고 수습상황에 따라, 기구 및 인력을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 사고현장 상황파악 및 보고, 방제작업 및 언론사 취재 지원, 방제책임구역 방제 조치 등 임무 수행

□ 사고수습활동 단계

○ 현장 방제상황에 따른 방제활동 지원(해양수산부)

- 지속적·정기적 현장상황 모니터링 실시/보고·전파
- 국민안전처 방제대책본부의 방제자원(인력·장비) 동원요청에 따라 유관기관 등 협조 요청
 - 국방부 등 : 방제인력 및 장비 지원
 - 환경부 : 수거된 기름 또는 폐기물 등 처리 지원, 야생동물 구호, 해양오염영향조사 등
 - 지방자치단체 : 해안 및 어항시설 방제(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 제2항), 자원봉사 활동지원, 어장·양식장 보호, 야생동물 보호 및 현장의료 지원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안의 자갈·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1. 기름이 하나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 해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기름이 둘 이상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 이 경우 기름이 둘 이상의 시·도지사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관할 시·도지사로 한다.

- 현장 방제상황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자원 동원

- 국제협력을 통한 방제활동 지원
 - 국민안전처로부터 인접국가의 방제자원 지원 요청시 외교경로를 통한 지원·협력 요청
 - 대상국가 : NOWPAP 회원국 및 방제장비 보유국
 - 방제자원 : 방제선박, 유처리제 살포용 항공기, 선박구난장비, 유흡착재 등
 - 기관별 역할
 - 외교부 : 국제협력 대상국가에 지원요청
 - 법무부 : 외국 방제요원에 대한 신속한 입출국
 - 관세청(통관지원국) : 방제장비 신속통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 방제장비·요원 신속검역
 -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 : 방제장비·자재 보관·운항을 위한 공항 사용 협조 및 비용감면
 - ※ 지방항공청은 시설사용허가 및 항공 관제
 - 국민안전처 : 지원 방제기자재 검수 및 배치
 - NOWPAP 회원국 및 IMO에 통보
- 피해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대책 강구
 - 신고한 피해상황(지역·피해자 수·피해내용 등) 파악
 - 피해정도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 생계안정자금 확보 후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 피해주민 보상청구를 위한 지원대책 추진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에 사고발생 통보
 - 보상주체(선주·보험사, IOPC Fund등) 협력체계 구축
 -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주민(단체)에게 국제기금 배·보상 청구절차 및 사정기준 안내
 - 피해규모,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특별법 제정 검토
- 해양오염영향조사 실시
 - 선주 또는 해양시설소유자에게 해양오염영향조사 지시

□ 복원 단계(사후조치)

○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 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 *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양오염 영향조사 결과 평가 및 복원계획 심의
 - ※ 관계부처(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종합복원계획 수립
- 생태계 복원계획에 따라 유관기관별 연차적으로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 해양오염영향 조사지역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지속적인 해양생태계 복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침몰선박 처리(해역관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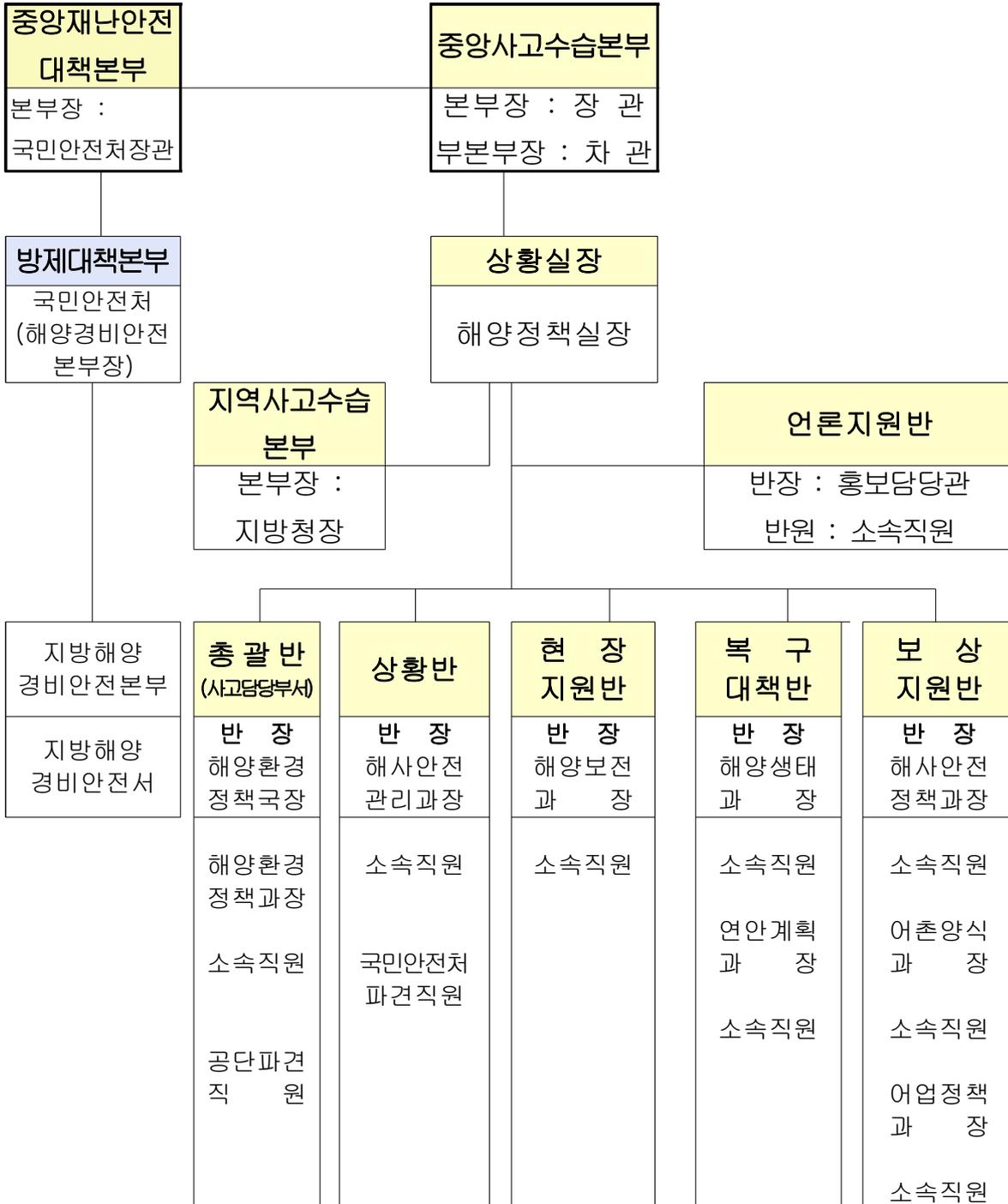
- 항로상에 침몰한 유조선처리를 위한 처리팀 구성
 - * 선주(보험사), 해역관리청, 국민안전처(해경안전서) 등
- 사고선사로 하여금 침몰 유조선의 처리(인양 또는 해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출토록 지시
 - * 구난업체의 선체처리 안전작업 행정절차 및 지도 등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대응 시스템 개선·보완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관련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
- 위기대응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대규모 환경(해양)오염 위기 대응 표준 매뉴얼 보완
- 해양오염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 수립·추진
- 사고수습활동을 기술하고 평가·분석한 백서발간

다. 추진체계 및 일정

□ 중앙사고수습본부



* 반 별 반장 및 반원은 사고유형 및 피해대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

○ 임무

구분	반장 및 반원	임무
언론 지원반	반장 : 홍보담당관 반원 : - 소속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업무 총괄 ◦ 사고관련 상황의 홍보 ◦ 언론모니터링 및 대응 ◦ 언론기관 업무협조(브리핑·인터뷰 등) ◦ 사고수습기관과의 언론협조
총괄반	반장 : 해양환경정책국장 반원 : - 해양환경정책과(과장 및 소속직원) - 해양환경관리공단 과건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수습 업무 총괄지휘 ◦ 반장 보좌 업무 ◦ 사고 수습 추진상황 종합보고 (대내·외) ◦ 사고 수습대책 수립 및 대책회의 주관 ◦ 사고 수습을 위한 민간 및 국제협력 ◦ 각 실무반 활동사항 지원 ◦ 각 반별 활동 및 조치사항 정리·보고
상황반	반장 : 해사안전관리과장 반원 : - 소속직원 - 국민안전처 파견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업무 총괄 ◦ 반장 보좌 업무 ◦ 현지사고수습상황 파악, 전파 (총괄반·각실무반) ◦ 지역사고 대책본부와의 업무연락 ◦ 국민안전처 등 유관기관 협조사항 파악 및 응급조치 협력
현장 지원반	반장 : 해양보전과장 반원 : - 소속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지원업무 총괄 ◦ 반장 보좌업무, 현장지원 지휘 ◦ 해양오염방제 현장 지원대책 수립 추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방제대책본부 등 회의 참석(파견포함) ◦ 현장 조치사항 파악·보고
복구 대책반	반장 : 해양생태과장 반원 : - 소속직원 - 연안계획과(과장 및 소속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지역 복구대책 업무 총괄 ◦ 반장보좌업무 ◦ 피해복구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 해수욕장 복원 등 연안정비 지원 ◦ 해양오염 영향조사 및 복원대책 강구
보상 지원반	반장 : 해사안전정책과장 반원 : - 소속직원 - 어촌양식과 및 어업정책과 (과장 및 소속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지원 업무 총괄 ◦ 반장 보좌 업무 ◦ 유류사고시 국제기구(IOPC Fund)에 통보 ◦ 유류오염사고 보상청구 지원대책 수립 ◦ 유류오염사고 보상청구 안내 및 지원 ◦ 피해 보상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외

- 운영 : 사고 발생 시 즉시 가동, 사고수습상황에 따라 개편
 - 반별 근무자 편성, 근무시간(09:00~익일 09:00), 임무부여 등
 - 사고 규모 및 사고수습 상황을 감안,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에서 보상 및 사고수습 전담 T/F로 전환

라. 소요예산('15년) : 해당없음

2-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대책(해양환경정책과)

가. 개요(목적)

- 국내 및 인접국 방사능 누출, 테러 등 원자력 사고에 대비하여 주관부서인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행정부와 협조를 유지하고, 오염된 수산물에 대한 생산·유통·소비 제한을 통한 안전한 식품 공급
- '11. 3.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에서 발생한 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 오염 우려
 - 후쿠시마 원자로 냉각 과정에서 오염수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므로 오염수 해양유출에 따른 방사능 오염 우려 지속
- 원전사고 등으로 방사능 오염이 발생한 외국항만·공항에서 반입되는 수산물 현황과 선박운항 실태를 파악하고, 방사능오염 국가로의 입·출항 전 안전조치 사항 이행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외교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

나. 주요내용

(1) 예방 및 대비 대책

- 원전 안전 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행정부 등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상시연락 체제유지
-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실시
 - '11.3월부터 현재까지 연근해·원양산 17개 품목*에 대한 방사능 검사
 - * 연근해산 13종(오징어·갈치·고등어·가자미·청어·옥돔·참조기·대게·다시마·미역·김·소라·굴), 원양산 4종(명태·꽁치·다랑어·상어)
 - 원양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물량 확대(당초 45건 → 90건)
 - 방사능 검사장비 1대 확충 및 인력 보강
- 항만·해양 방사능오염검사 지원 등을 위한 지원 체계 점검
- 선박 운항 상황 점검

(2) 대응 대책

- 위기 경보 구분

단 계	조치 내용
관심 (인접국가 원자력시설 사고 발생(INES 4~5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반 설치 준비 ○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 국내 생산 수산물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원 관리검사 체계 점검 ○ 선박 운항 상황 점검·모니터링 ○ 항만·해양 방사능 오염 검사 지원 체계 점검 ○ 언론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 점검
주의 (인접국가 원자력시설 사고(INES 6~7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반 설치 준비 ○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 대책반(소속·산하기관) 상황 전파 ○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 체계 점검(대책반) ○ 해당지역 선박 운항 상황 점검·모니터링 ○ 항만·해양방사능 오염 검사 지원 체계 점검 ○ 언론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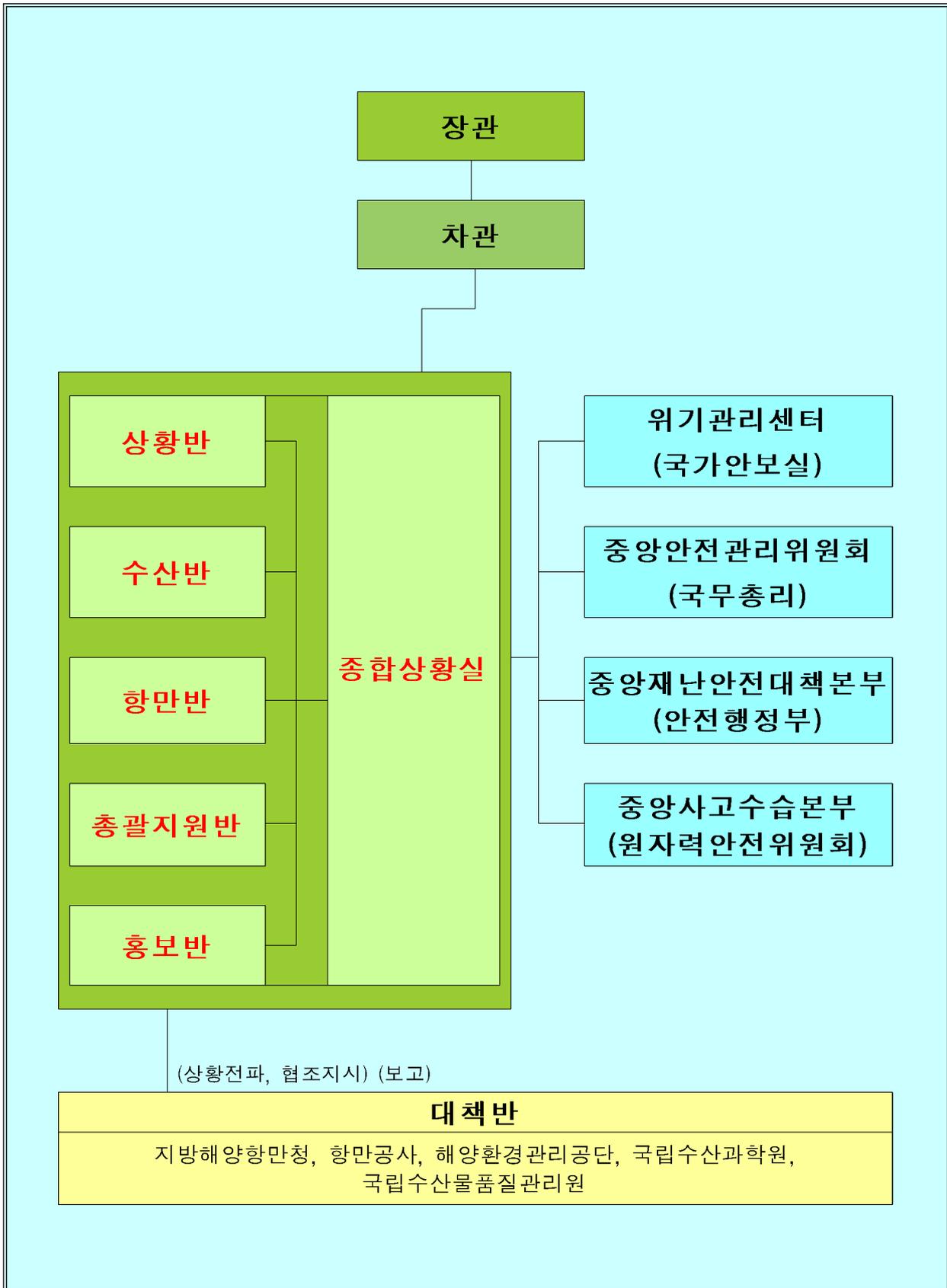
단 계	조치 내용
경계 (방사성물질 대규모 국내 유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반 운영 ○ 대책반(소속·산하기관) 상황 전파·운영 ○ 방사능오염 검사지원(대책반) ○ 방사능오염지역으로의 선박 운항통제 여부결정 ○ 해양방사능 오염 검사 지원 ○ 언론모니터링 및 대응
심각 (인접국의 방사성물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어 국민보호조치가 필요한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반 운영 강화 ○ 대책반(소속·산하기관) 운영 강화 ○ 방사능오염지역으로의 선박 운항통제 ○ 해양방사능 오염 검사 지원 ○ 언론모니터링 및 대응 강화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비상등급별 대응조치 강구
 - 유관기관과 정보교환 강화 및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수산물의 반출 등 유통·소비 제한 대책 검토
 -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통제 등
 -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조업 지도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방사능 누출 단계별 어선소산 및 어항시설물 이용 제한 조치
- 선박 및 항만시설 종사자, 여행객 등에 대한 홍보
 - 국제여객터미널, 선원 등에 대한 안내방송, 전광판 표출 등 홍보활동 실시
- 방사능 오염지역으로의 선박운항 통제

(3) 복구 대책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복구대책 수립시 적극 참여
 - 방사능 재난으로 오염된 지역, 시설, 물품 등의 복구대책 수립시 우리부 적극 참여
 - 사고 후 오염된 수산물의 관리 및 처리방안 등을 주관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 우리부 위기관리 체계도



※ 각 반별 임무

반명	소속	근무자 편성	임무
상황반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	해양정책실 소속 직원	대내상황보고 종합 해양환경 분야 단계별 총괄 조치 및 대응
수산반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과	수산정책실 소속 직원	수산분야 단계별 총괄 조치 및 대응
항만반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해운물류국, 해사안전국 소속 직원	항만분야 단계별 총괄 조치 및 대응
총괄지원반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	해사안전국 소속 직원	대내·외 대응 업무 지원
홍보반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 소속 직원	언론 모니터링 및 대응, 보도 자료 배포 등
대책반	소속·산하기관	소속·산하기관 직원	현장 상황파악·보고 및 단계별 대응 조치

라. 소요예산('15년) : 해당없음

2-3. 육상화물운송 차질 등 위기관리(항만물류기획과)

가. 개요(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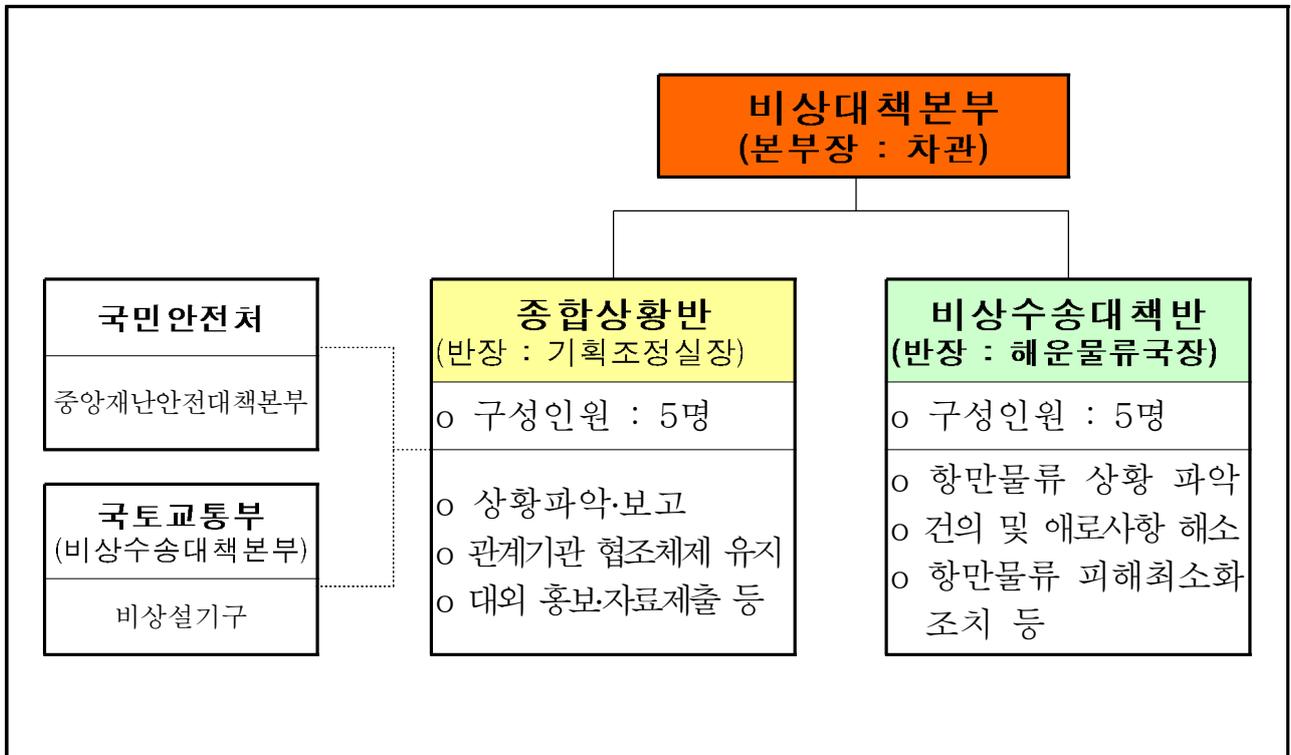
- 육상화물 운송 분야 종사자들의 운송거부로 인한 위기발생시 해양수산부가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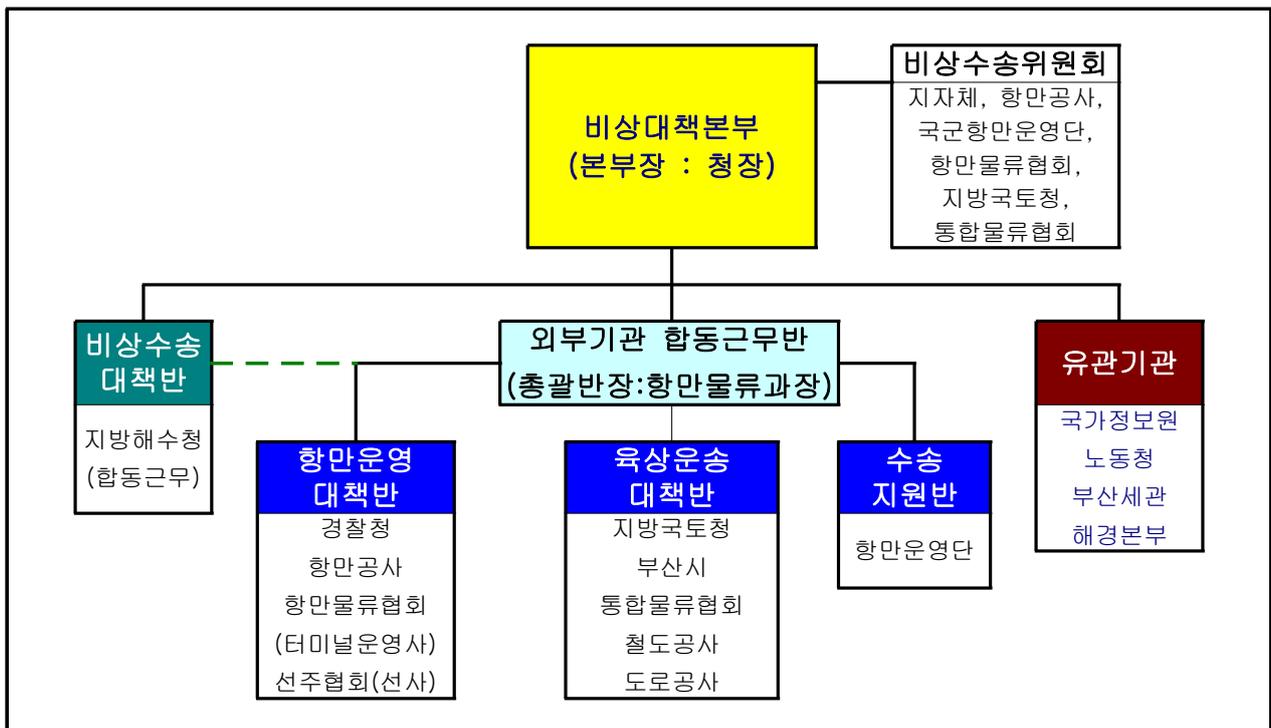
-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조치로 항만물류 최소 기능을 유지하고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
- 관련기관, 터미널운영사 등을 통해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육상화물 운송 종사자들의 동향을 적극 파악하는 등 사전대비 태세 강화
- 항만장치장 효율성 대책 점검 및 항만물류의 저해요소를 사전 발굴·개선하는 등 사태 발생시 항만물류 피해 최소화 여건을 조성
-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대처로 불법행위·운송거부 행위 차단
- 사전 확보·협조된 비상 수송용 대체수단과 인력을 적시에 투입, 항만물류 기능을 최소한 유지
- 제도 개선사항·운송거부행위 부당성·국민경제 피해 등 집중 홍보로 반대여론 형성 및 운송복귀 압박
- 사태의 상황을 고려하여 언론 브리핑·홍보 등을 적시에 실행

다. 추진체계 및 일정

<본 부>



<지방해양수산청>



라. 소요예산('15년) : 해당없음

2-4. 전염병대책(해사안전관리과)

가. 개요(목적)

- 전염병 위기상황 발생시, 범정부적 위기관리 체계에 의거 위기 상황 해상교통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신속 전파
-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 긴급 방역에 따른 해상교통 부문 협조 및 지원

나. 주요내용

- 전염병 위기상황 신속 전파 및 전광판, 안내방송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해 전염병 주관부처(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방역 활동에 대한 적극 지원
-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등 위기단계별 조치
- 국내항 입·출항 선박 관리 등

< 관심 (Blue) >

-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위기경보를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 단체에 신속 전파
 - *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국내 입·출항 선박 및 외국인 선원 관련단체
- 감시체계 강화 및 대응 점검
- 전염병 발생국과 관련한 선박 입·출항 파악 등
- 전염병 환자 입항 시 이송 및 격리 체계 파악 등

< 주의 (Yellow) >

-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경보 관계기관(부서)신속 전파
- 국내유입(국외유출) 차단을 위한 사전 대응 방안 확정·시행
- 보건복지부 긴급방역에 따른 협조 및 지원

< 경계 (Orange) >

-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경보 관계기관(부서)신속 전파
-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결과에 따른 협조사항 지원
- 국내항 입·출항 선박 관련 대응조치 전면 시행
- 전국민 홍보 및 대응요령 전파

< 심각 (Red) >

-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경보를 관계기관(부서)신속 전파
- 국가방역시스템 추가동에 따른 지원
- 대국민 홍보 강화에 협조

○ 해양수산부 대책반 운영

- 운영기간 : 경계(Orange) 단계 ~ 상황 종료시 까지
- 장 소 : 영상회의실(5층)
- 대책반 편성 : 6개반(대책반장 : 기획조정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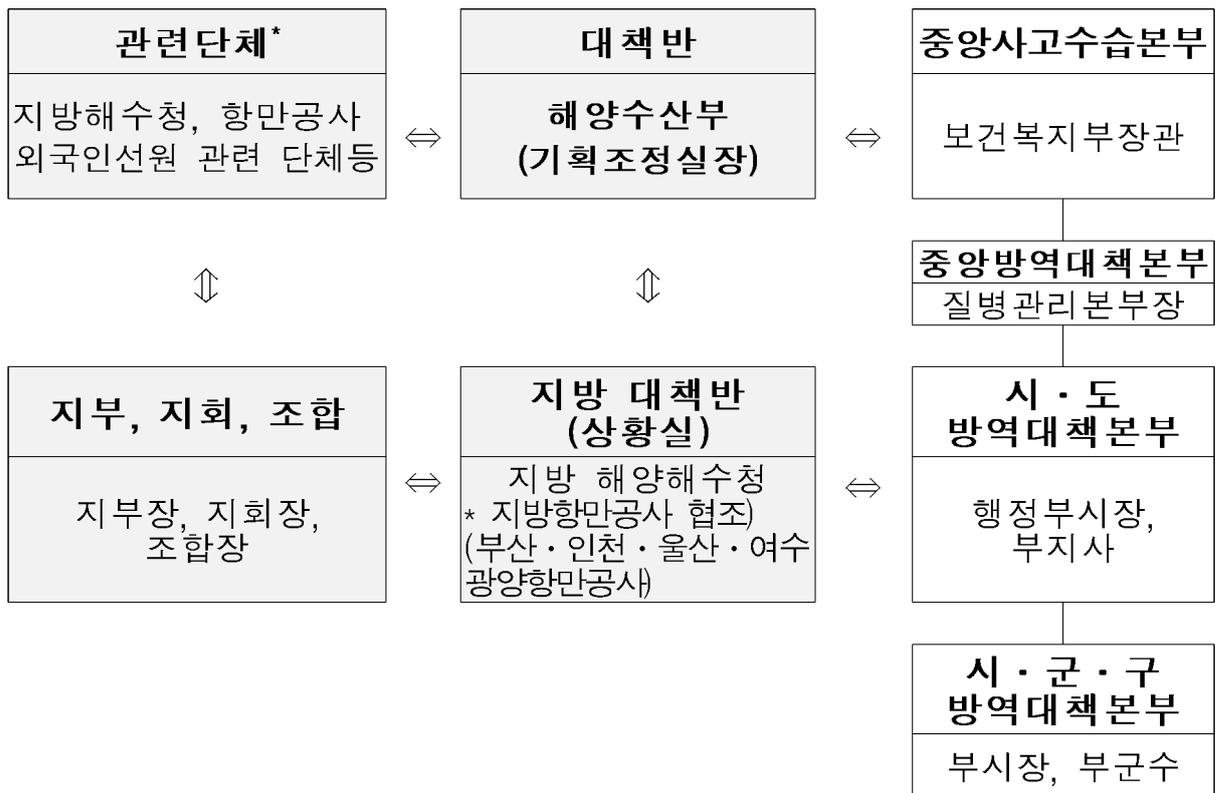
* 총괄반, 상황지원반, 홍보반, 현장지원반, 복구지원반, 대외협력반

※ 대책반/지방 대책반 경보 단계별 운영 방안

단 계	주요 내용
관심/주의 (유행 인지 단계)	○ 대책반/지방 대책반 설치 준비 ○ 관련 단체 상황 전파
경계 (산발적 환자 발생 단계)	○ 대책반/지방 대책반 운영·가동 ○ 국내항 입·출항 선박 관련 단체 대책반 운영·가동 ○ 외국인 선원 관련 단체 대책반 운영·가동
심각 (대규모 전염병 환자 발생 단계)	○ 대책반/지방 대책반 운영 강화 ○ 국내항 입·출항 선박 관련 단체 대책반 운영 강화 ○ 외국인 선원 관련 단체 대책반 운영·가동 강화

다.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



* 관련 단체 : 국내항 입·출항 선박 관련 단체(한국선주협회,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한국해운대리점협회), 외국인 선원 관련 단체(한국해운조합)

○ 추진일정

- 위기상황 발생시 해양수산부 내부 및 산하기관(단체)에 위기경보 발령 상황을 전파
- 대책반 편성 운영 및 관계기관 회의 개최

라. 소요예산('15년) : 해당없음

3. 안전관리대책

3-1. 해상안전(선박사고) 대책(해사안전정책과)

가. 개요(목적)

- 해양사고의 약 90%를 차지하는 인적요인의 체계적 관리와 업계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제고
- 해양교통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한 선박통항여건 확보
-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운영

나. 주요내용

(1) 예방대책

<인적요인 해양사고 관리>

- ① 종사자 및 선사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추진
 - '15년 종사자 대상 해양사고 예방교육 수립·시행('15.3)
 - 선원·선주·안전관리책임자 등 육·해상 종사자 47천명을 대상으로 방선교육 및 항만별 집합교육 실시
 - 선박설비의 주기적 점검방법, 항만별 안전 취약요소 및 사고 사례·교훈을 중심으로 교육 시행
 - 선사 CEO 대상 해양안전리더 교육 추진('15.4~)

- 선사 경영층 대상, 안전에 대한 이론과 실무, 우수사례 등의 교육을 통해 안전경영에 대한 선사 경영진의 인식전환 유도
-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추진('15.4~)
 - 선사의 자발적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해양사고 감소 선사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업자로 지정·인센티브 제공
 - * '해양안전우수사업자' 표지 수여, 선박 검사·심사수수료 경감 등
- ② 매월 1일 해양안전의 날을 활용 안전캠페인 전개를 통한 종사자 및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
 - 지역별 선박 및 관련 시설 안전점검과 취약요인 중점 점검, 선사·선원·선주 등 종사자 현장교육, 현수막 게시, 가두캠 페인 등 실시
- ③ 선박·사업장의 해사안전관리 상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도·감독체계 강화를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제 운영
 - 감독관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신규 채용자에 대한 교육 시행('15.3), 업무지침 및 분야별 감독업무 매뉴얼 마련('15.4)
 - 연간 지도·감독 계획수립 및 현장 업무 투입('15.4~)

<안전한 선박통항여건 확보>

- ① 주요 선박 통항로 및 위험물 취급항만 안전성 평가(~'15.12)
 - 지정항로* 등 주요 선박통항로와 중대 해양사고 발생수역** 등에 대한 해상교통환경 평가 및 안전대책 환류
 - * 교통안전특정해역(5개소), 통항분리항로(3개소), 지방청 고시항로(26개소)
 - ** 맹골수도(세월호), 부산항 항계 부근(마리타임메이시호, 현대브릿지호) 등
 - 주요 위험물 취급항만(울산·광양·인천)의 유조선 통항로 분석·진단

- 규모별 조종성능, 항로·정박지·선회구역별 교통용량 분석, 예선사용기준 등 유조선 안전항행 가이드라인 수립·전파

* 항만개발 등 장래수요를 포함한 선박통항로 개선, 안전관리 강화방안 모색

② 항로표지 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

- 항행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항로표지 설치(34기), 해양기상신호 시스템 구축(30개소) 및 조류신호표지 설치(1개소) 등

* 등표 19기, 무인등대 15기 등

- 노후시설 개량 및 대수선, 장비대체 및 유인등대 정비 등

(2) 대비대책

- 위기경보 수준(관심-주의-경계-심각)별 상황관리 강화
- 유관기관 공조·협력체계 구축·유지
 - 관계부처(기관) 비상연락망, 선박·장비 관리상태 및 사고대응 체계 점검
 - 선박사고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자체 위기평가회의 개최를 통한 위기수준 평가 및 위기경보 발령 (필요시)
 - 위기상황 대비 중앙·현장 지휘체계 구축
- 해양재난 발생 대비태세 확립
 - 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 및 위기상황 모니터링
 - 위기상황 재발방지를 위한 선박·시설, 통항로 점검 강화
 - 해상 표류물, 침몰·좌초 등 위험사항에 대한 항행경보 발령
 - 현장통제, 경계구역 설정 등 선박 통행제한 결정(필요시)
- 해양재난 대비 분야별 교육 및 훈련 실시

- 수출입 위험물 안전관리 제도 정비
 -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 운영 내실화 및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제도 실효성 확보
 - 위험물 운송관련 국제기준(IMDG Code) 개정 등에 따른 제도 강화
 -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항로표지 시설확충 및 기능 강화
 - 항행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항로표지 시설 설치 및 기존의 노후시설 개량·기능 강화
- AIS 인프라 정비 및 확대 추진
 - AIS 기지국의 처리용량 초과, 음영구역 등 문제해소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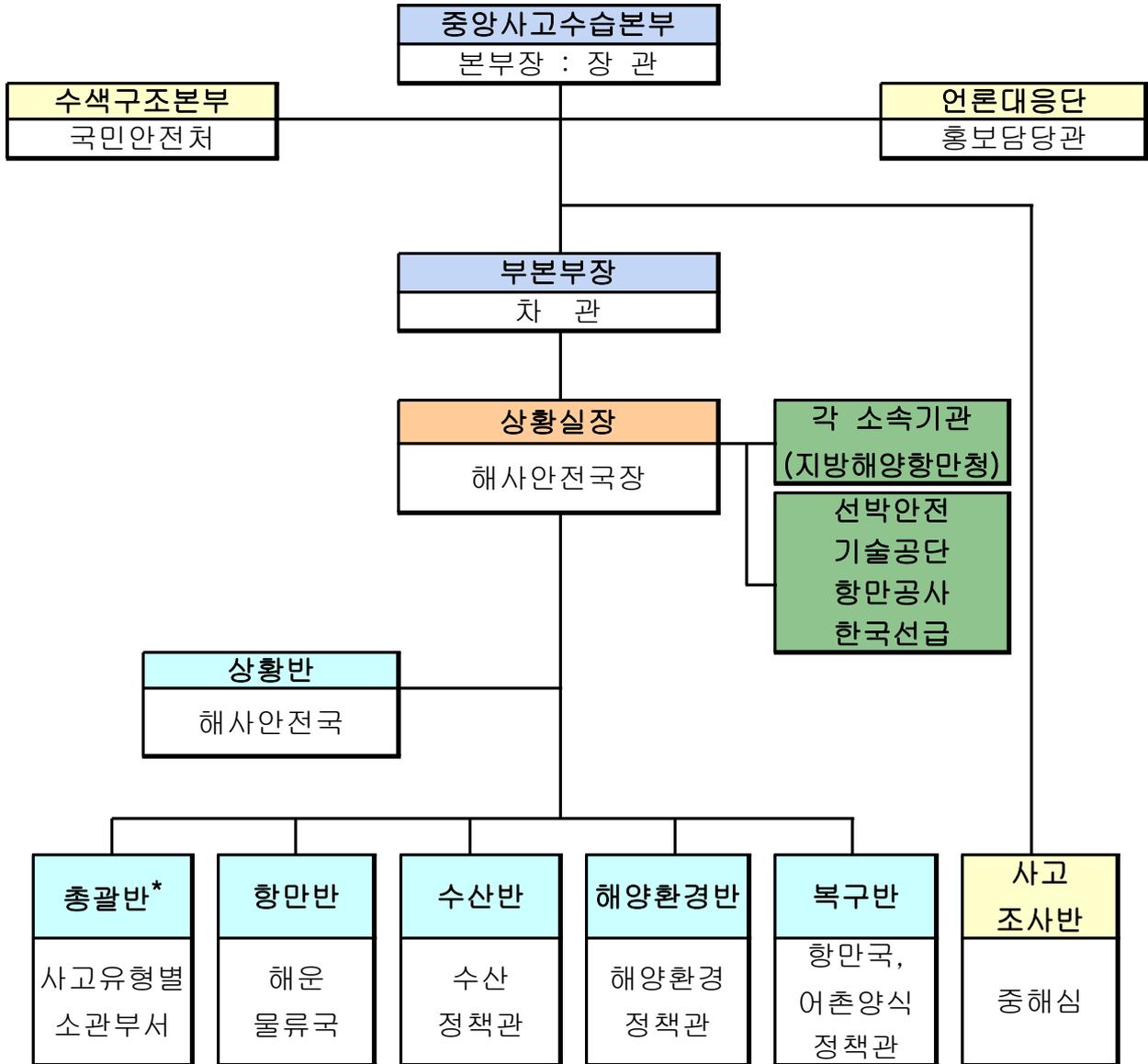
(3) 대응대책

- 중앙·지역사고 수습본부 운영 및 기관별 업무분장 확립
- 대형사고 시 안전관리비상대책 본부·편성 운영
- 태풍 내습 시 선박 안전관리, 항만 운영지침 등 지방청별 안전 조치 시달
- 사고선박 위치파악 및 정보사항 보고 및 전파
- 위기 유형별 및 단계별 대응조치 시행(관심→주의→경계→심각)

다. 추진체계 및 일정

- 각 추진전략 과제별 추진일정 : 연중 및 수시

○ 중앙사고수습본부



* 「해양안전 및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별표 2)에 따른 사고유형별 소관부서가 총괄반을 담당

사고유형	총괄부서
일반선박사고	해사안전관리과(해사안전국)
내항여객선	연안해운과(해운물류국)
외항여객선	해운정책과(해운물류국)
항만내 선박사고	항만운영과(해운물류국)

라.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14년 실적	'15년 계획	비고*
소 계	50,461	59,383	
선박운송안전 확보	481	752	인적과실예방
해양사고예방활동지원	-	5,500	해상교통영향평가· 해사안전감독관
표지시설	49,980	53,131	교통시설확충·개량

* 내역사업인 경우 내역사업명을 비고란에 표기

3-2. 국가기반체계 보호(항만운영분야)(항만운영과)

가. 개요(목적)

- 국가 경제 및 국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류 대란을 사전 예방하고, 우리 항만의 대외경쟁력 확보
- 예선파업, 항만하역 근로자 하역거부 등 항만물류 및 항만운영 차질 발생시, 예선지원대책 운영 및 항만근로자 대체 인력의 확보 등을 통한 최소 수준의 항만물류 기능 유지
 - 위기 발생시 대응매뉴얼에 따른 위기 상황의 효율적 관리

나. 주요내용

《 예선파업 》

1) 타 항만 예선지원 대책

- 특정 1개 항만에서만 파업이 있는 경계(Orange)단계에서는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인접항만 보유 가용예선을 투입
 - 민간 예선업체보다 공공성이 높고, 순환근무로 선원 피로도가 낮은 해양환경관리공단 보유 예선 우선 활용

- 특정항만 파업이 장기화하거나 2개 항만 이상 연대하여 파업하는 심각(Red)단계에서는 원거리 항만의 가용예선도 투입
 - 구체적 투입시기와 투입범위·규모는 경계단계에서 진행상황에 따라 검토·결정
- 당해 항만으로의 왕복이동에 따른 비용 정부보상
 - 투입예선의 왕복이동에 따른 유류비에 대해서만 보상조치
- 항만별 지원가능 예선 리스트 확보 및 유지
 - 지방항만청이 지역예선운영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리스트를 작성하여 본부에 보고하고 관련업체와 협조체계 구축
- 정계지 마련 및 배치문제 : 지방청 주관으로 해당항만의 적정 장소에 분산 배치하여 효율적 예선 운영 도모

2) 파업기간 중 예선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 사용시간 단축 운영
 - 접안시 : 도선사 승선후 최대한 부두에 근접할 때 예선 사용
 - 출항시 : 기상상태, 본선 동정 및 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본선 자력도선 할 수 있도록 조치
- 예선사용기준 완화
 - 선박 및 항내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선박톤수별 예선이용 척수를 규정한 해당항 예선운영세칙 예선 사용의무 및 예선사용기준을 부두운영사, 선장, 도선사 등과 협의하여 조정운영
 - 지방청장은 예선파업 등 비상시 당해 항만의 등록예선으로 원활한 테일링작업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000마력 이상 선박(이하 “대체선박”이라 함)의 테일링작업을 허용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항만여건에 적합하도록 별도로 정함
- * 세부사항은 대체선박의 시설기준(마력, 추진기형 등)과 기상악화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정유사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기상악화시 작업 중단, 방제선 투입 등)를 포함해야 한다

- 예선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입항 스케줄 또는 조석에 따라 입·출항하는 선박(위험물운반선, 여객선 등)의 우선순위 조정
- 항만관제센터에서 입출항 예보를 사전 확인하여 시간조정 및 예선사용 척수 확인·조율
- 타 항만 예선을 지원받더라도 항만을 원활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선사, 부두운영사들과 협의하여 타항만으로 전배도 고려
- 예선지원에 최대한 협조토록 하고, 거부시 행정제재가 따를 수 있음을 예선업체에 사전홍보

3) 비상항만운영조직 설치·운영

(1) 관심단계

- 본부와 해당 지방청 업무 소관과에서 자체 비상대책운영반 가동
- 관련부서별 임무
 - 주관부서인 항만운영부서는 동향 파악, 예선지원 비상대책 마련 및 이를 토대로 한 일일상황 보고 등
 - 협조부서인 선원담당부서는 동향 파악, 노사간 쟁점 파악 및 필요시 설득 또는 조정, 현장사업장 근로감독 등
- 근무자 편성 및 근무시간
 - 과내 담당직원을 중심으로 평시와 같이 근무하되, 필요시 과장 판단으로 조정
- 상황보고 요령
 - 지방청 항만물류과는 매일 18:00 기준으로 본부 항만운영과에 보고하고 항만운영과는 이를 취합하여 익일 08:00이전에 메모 보고

(2) 주의단계에서 상황종료시까지

○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주의단계에서는 해운물류국장이 본부장이 되고, 경계단계부터는 중앙수송대책본부(본부장 : 차관)으로 격상

* 화물연대, 철도노조 등 타 노조와 연대행동시 특별대책본부로 전환

○ 반별 임무

구 분	구 성	임 무
본부장	· 관심, 주의 : 해운물류국장 · 경계, 심각 : 차관	비상대응대책 총괄
부분부장	· 관심, 주의 : 해운물류국 과장 · 경계, 심각 : 해운물류국장	비상대책시행, 쟁점과약, 조정 등
총괄반	· 반장 : 해운물류국 과장 · 반원 : 사무관 1, 6급이하 1	대책본부 업무총괄, 관련상황 종합 및 보고서 작성 등
항만대책반		예선지원실태 파악, 관련기관 협조 체제 구축·운영, 업무연락 등
홍보반		홍보기획, 각종 보도 모니터링 및 언론기관 자료배포 등

○ 근무자 편성

- 해운물류국 직원 합동근무를 하고, 각 반별로 반장 1명(과장 또는 서기관급), 반원 2명(5급 1, 6급 1)

* 경계단계부터 경찰청, 해경안전본부,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선주협회 등 항만이용자 등에 직원파견을 받아 합동근무

○ 파견받는 기관·단체별 주요 역할

- (안전처, 경찰청) 정보과약·지원, 불법행위 차단 및 필요시 경찰력 협조 지원, 주요시설 보호대책 수립·시행 및 지원 등
- (한국예선조합) 예선업계의 본선 지원상태 파악 및 독려, 미참여 업계와 그 승무원들의 애로사항 파악·보고
- (선주협회, 항만물류협회 등 항만이용자) 예선 미확보 선사 파악 및 보고, 선박입항 스케줄 또는 타 항만 전배처리 검토 등

- 근무시간 및 상황보고 요령
 - (평일) 24시간 근무
 - (공휴일) 주간 08:30~19:00, 야간 18:30~09:00
 - * 경계경보상황시부터는 평/공휴일 구분없이 24시간 근무
- 상황보고 : 1일 3회(12:00기준, 18:00기준, 22:00기준)
 - 보고기관은 장·차관, 해운물류국장, 청와대, 총리실, 국가정보원, 안전행정부, 경찰청 등

4) 불법행위 사전방지 및 엄정대처

- 파업 미참여 예선들에 대한 사전보호 조치
 - 파업가담자들의 예선파손 등 불법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경비토록 하고, 필요시 경찰력 배치
-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및 구상권 행사
 - 예선 및 기타 주요 시설물 파손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구상권 적극 행사

5) 노사간 쟁점 중재 등 노사관리

- 지방노동청의 공식적인 중재와 병행하여 우리부(지방청)도 자체적으로 노사양측 개별 설득 또는 중재 추진
- 사태 장기화에 대비, 지방청 선원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파업 미참여 업체나 타항만 지원 예선업체 사업장을 방문, 승무원 고충상담
 - * 승무원들의 피로도 현장확인, 애로 및 건의사항 파악 등

6) 파업장기화 시 비상조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76조에 의한 긴급조정 요청 (→고용노동부)
 - *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국민경제를 해하는 경우 가능

《 항만하역 근로자 하역거부 등 》

1) 예방대책

- 관련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 국정원, 경찰, 노동부, 행정안전부간 정보 공유체제 구축
- 항만하역 거부 유발요인의 사전 발굴·관리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한 해결책 강구
- 일부 항만별 하역거부 유발요인, 쟁점 사항의 사전 발굴 관리로 다른 항만으로의 확산을 사전 차단
- 해양수산부와 화주, 항만하역사 및 전국항운노조연맹 등 관계단체 간 대화(항만분야 노사정 협의회 활용)와 항만운영정책에 노조의 참여 확대를 통해 합리적 해결 여건을 조성
-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항운노조 상용화) 추진 관련 기득권 유지 또는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한 집단행동 개연성에 대한 대책 강구
- 항만노동인력수급관리위원회 구성·운영 항만 확대
 - (확대방안) 부산항에 시범적으로 구성 추진 중인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여건이 조성되는 다른 항만으로 확대
 - (위원회 기능) 항만노동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부두건설 및 폐쇄 등에 따른 항만노동인력 전환 배치 등
- 항운노조원 상용화 지원사업 예산 확보
 - '14년도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지원 : 4.6억원

2) 대비대책

- 유관기관 간 관련 항만근로자 동향에 대한 정보수집 및 공유 등 협조체제 본격 가동
 - 상황실 가동, 행안부 종합상황실과 상황 네트워크 구축

- 관련단체와의 대화 지속 및 요구사항을 포함한 항만하역 분야 제도개선 방안 강구
- 항만하역 집단 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처방침 발표
- 항만하역 집단 거부에 대비한 비상대책 수립 발표
 - 비상대책본부(본부장 : 차관) 설치
- 연대파업(철도/화물연대 등 육상운송분야) 추진동향 점검 및 범정부차원의 비상대책 종합 강구
 - 연대파업시 범정부 차원의 부처합동 대책본부 설치 등
- 대체 수단·인력 현황 확인 및 대체 투입 가능여부 점검
 - 항만하역사 기능인력, 군 (단순노무)인력, 「항만기능인협의회」 등록자 등 대상
- 정부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언론 인터뷰·기고 등 홍보활동 강화
 - 항만하역 거부이유 및 요구사항, 정부의 입장과 대처방향, 집단 행위의 불법성 및 항만하역 거부에 따른 국가경제 피해 등 중점 홍보

3) 대응대책

- 항만하역 거부사태 및 수출입 화물의 처리 차질 관련 동향의 신속·정확한 파악과 위기 수준 종합평가
-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심, 범정부 대응 방향 종합 수립 및 시행
 -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는 정책관련 방향 제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대체자원 투입 등 대응지원방안 심의

- 주관부처 · 기관 · 지자체간 협조, 종합 대응책 강구 시행
 - 타 물류분야와 연대파업시 국무총리실과 협의,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책기구로 격상 가동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하여 대응활동 강화
- 집단 항만하역 거부 및 항만하역 방해행위 등 불법행동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적법대처 방침 신속 발표
 -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또는 관계장관회의 결과로 발표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명의 성명 발표
- 대체 하역인력 · 수단 투입 등 비상대책 즉각 시행
 - 군 (단순노무)인력 및 항만하역사 기능인력 투입, 항만별 · 지역별 대책본부 가동
- 경찰력 배치, 항만하역 인력 · 장비 운영 보호조치
- 국민불안 해소 및 사태 파장 확대 억제, 국가 및 항만신인도 유지를 위한 대국민 · 대해외 홍보활동 강화
 - 비상대책을 통한 항만기능유지 사례, 수출입 화물처리실적, 국가 경제 피해실태, 정부의 대응대책 등 중점 홍보
- 최소기능 유지를 위한 응급동원 대책
 - 대체 인력 · 수단 투입 등 비상대책 강구
 - 군인력(단순노무 2,990명) 투입은 국방부에 신속히 지원 요청
 - 장기화 대비, 하역사별로 항운노조원 대체인력 충원방안 마련
 -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관련자 고발 등)
 - 특히 하역장비 점거 및 가동에 대한 물리력 동원시 민 · 형사 책임추궁이 불가피함을 천명

< 주요 관리대상 향만별 군 인력 소요현황 >

(단위 : 명)

향운노조명	노무공급 향만명	향민분야 노조원수	주요관리 대상향만	군인력 대체 소요인원
합 계	-	6,838	12개 향	2,990
전국향운노조연맹	-	-	-	-
부산향운노조	부산향	1,219	부산향	1,100
인천향운노조	인천향	404	인천향	590
평택향운노조	평택향	-	평택향	-
경북향운노조	포항향	954	포항향	270
울산향운노조	울산향	861	울산향	270
경남향운노조	마산통영·삼천포·옥포·장승포·고현향	530	마산향	170
순천향운노조	광양향	37	광양향	170
광양향만향운노조	광양향	485		
동해향운노조	동해·묵호·삼척·옥계향	559	동해향	110
전북서부향운노조	군산향	319	군산향	95
전남서부향운노조	목포향	283	목포향	80
충남서부향운노조	장항·보령·태안·대산향	127	대산향	80
여수향운노조	여수향	67	여수향	55
완도향운노조	완도향	80	-	-
속초향운노조	속초향	11	-	-
진해향운노조	진해향	89	-	-
당진향만향운노조	당진향	277	-	-
서산향운노조	대산향	38	-	-
서울경기향운노조	경인향	14	-	-
제주특별자치도향운노조	제주·서귀포향	484	-	-

* 군 인력지원 협의 완료(국방부, 2005. 4)

4) 복구대책

- 국무회의·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사후 수습방향 제시 및 종합 평가
 - 사태 종료시까지 범정부 대처방향의 지속적 일관된 적용으로 정부내 혼선 방지
-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국민안전처, 국방부 등 유관부처 합동 피해 확인 및 복구·보완 방안 공동 강구
 - 비상 항만하역대책 실효성 평가, 보완방향 수립
-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법적 대응과 복귀자에 대한 신속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피해 최소화
- 비상 대체수단 효과 홍보 및 항만 물류기능 정상화 선언을 통해 국민 불안감 완화와 국가 신인도 회복 촉진
 - 적정 시점, 관계부처 간 공동으로 물류기능 정상화 선언
- 각종 요구사항 및 사태 유발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대안 강구 등 제도 개선책 신속 시행
- 항만분야 노사정협의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대화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사태 수습여건 조성

다. 추진체계 및 일정

○ 기관별 책임/역할

구 분	내 용
국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상황 종합평가 · 재발방지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 종합 심의
NSC 사무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상황 종합 보고·평가 · 관련 대체자원 관리체계 등 위기관리체계 평가·보완 · 위기관리 대비계획 보완·종합조정
국무총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상황 및 정부대응 종합 평가 · 국가물류체계(항만물류 포함) 정상화방안 및 재발요인 점검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하역·물류체계 안정대책 및 재발 방지대책 강구 · 항만물류 피해복구 및 비상대책 보완 · 항만물류기능 정상화 선언 등 홍보활동 강화 · 항만분야 노사정협의회 등을 통한 사태 수습 · 육상운송분야 등 관련분야 동향 모니터링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국가정보원, 경찰청) · 사법절차 시행(검찰청, 경찰청) · 항만시설 보호 및 장기농성 등 대비(경찰청)
유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기능인력·단순인력 지원(국방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통합지원(국민안전처) · 관련 법령(직업안정법) 개정 등을 통한 불이익 방안 시행(고용노동부) · 종합 상황관리 및 시설보호, 하역방해행위 통제, 질서 유지, 위법자 사법처리 등(해경본부, 경찰청, 법무부 등)

- 주요 추진일정
 - 위기상황 발생시 해양수산부 내부 및 산하기관(단체)에 위기경보 발령 상황을 전파
 - 대책반 편성 운영 및 관계기관 회의 개최

라. 소요예산('15년) : 해당없음

3-3. 국가기반체계 보호(항만건설분야)(항만개발과)

【해일(쓰나미)·지진 대책】

가. 개요

- 태풍·해일(쓰나미) 및 지진이 발생하여 항만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 등이 예상될 경우를 대비, 사전에 예방하고 복구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나. 예방대책

1) 공 통

- 항만시설 재난대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등 재난관리체계 구축
- 항만시설 재난대비 관련 각종 재난예방대책 수립·시행 등을 통하여 국민의 재산 및 국토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우선적 고려
- 태풍·해일 등 재난 상황으로부터 항만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절차 수립과 시설물의 응급복구체계 확립

- 항만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 강화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
 -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 연차별 보강 추진
 - 내진설계기준 적용실태 지도·감독 강화
 - 인·허가 및 공사 발주전 내진설계기준 적용여부 확인 및 행정지도

2) 각종 안전점검·정비 강화

- 항만시설 재난취약시설의 점검·정비
 - 항만시설 중 방파제·호안 등 방재시설과 안벽·갑문 등 항만 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한 수시 점검·정비
 - 재난위험요인이 있는 항만시설물 및 지역에 대하여는 관리카드 작성,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강화
 - 2015년도 점검계획

점검일정	대상항만	점검시설	담당부서
상반기	국가·지방 관리항	·항만시설 ·항만공사 현장 ·1·2종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항만개발과 항만개발과 (중앙품질안전관리단) 해당 지방청
하반기	국가·지방 관리항	·항만시설 ·항만공사 현장 ·1·2종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항만개발과 항만개발과 (중앙품질안전관리단) 해당 지방청

- 항만시설 공사장 등 관리
 - 공사착수시 공사현장별로 수방단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우기 및 태풍·해일기 대비 일제점검 등 실시
 -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은 가급적 태풍·해일기 이전에 완공 또는 완성단면으로 시공되도록 공정계획 수립 시행
 - 피복석 등 보강자재를 현장인근에 사전 확보하고, 태풍·해일 주의보 발효시 사전 확보된 보강자재로 임시보강 조치한 후 인원·장비를 안전지대로 대피
- 기존 항만시설물 안전조치
 - 외곽 및 계류시설 등은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안전상 취약 및 손상된 시설물은 유지보수계획 수립·시행
- 항만시설 재난위험시설의 지정관리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항만시설물 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
 - 항만시설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및 정비 조치에 관한 사항을 소방방재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 항만시설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정·고시된 재난위험 시설에 대하여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하여 정비

3) 항만시설·장비 안전대책 강구

- 항만시설 및 장비 피해 경감대책 수립·추진
 - 기상악화시 각종 하역장비별 피해경감대책 수립 및 점검
 - 기상특보 상황별 하역시설 장비별 안전대책 강구
- 항만운영시설 피해방지대책 추진
 - 임항창고, 야적장, 조명시설, 급수시설 등 각종 시설 지속적인 기능 유지관리 실시

4) 재난 안전시설 확보 및 유지·관리

- 항만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 방파제 축조 및 노후 계류시설 개·보수, 표지시설 보수, 갑문 시설 개·보수 등

5) 재해취약 항만지역 정비 추진

- 해일침수피해 등 사전 대비로 항만지역의 부가가치 상승 및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의 안정성 제고
- 재해취약 항만지역 정비
 - 100년 빈도 해일 내습 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22개 항만지역에 대해 단계별로 추진('30년까지 사업비 1조 1,886억원)

1단계(10개 항, '11~'20, 6,609억원) (재해이력이 있었던 항만)	부산항, 광양항, 목포항, 통영항, 장항항, 군산항, 옥포항, 장승포항, 삼천포항(2개소), 삼척항	
2단계 (12개 항, '21~'30, 5,277억원)	재해피해가 미미한 항만	부산남항(2개소), 삼천포항(1개소), 나로도항
	무재해 항만	평택·당진항, 완도항, 여수항, 대천항, 갈두항, 흑산도항, 거문도항, 녹동신항
재해피해가 있으나 신규 개발계획이 있는 항만	마산항,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	

- 기존 방파제 보강
 - 높은 파고에 대해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된 기존 방파제(32개 항만 71개소) 보강추진('20년까지, 1조 3,520억원)

6) 항만시설물 내진성능확보로 지진피해 예방

- 항만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항만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 미 확보 항만시설물에 대하여 내진 보강 시행
 - 지진에 취약한 항만시설물 내진보강을 통해 지진에 대한 항만 시설물 안전성 확보

7) 항만시설 연구개발과 정보시스템 개선

- 항만시설 태풍·해일피해 저감기술 연구·개발
 - 각종 연구기관과 행정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사항을 방재시책에 반영
 - 해일·너울성 파랑을 조기에 경보하는 “재해예방경보시스템”을 주문진항, 삼척항 및 속초항에 구축(‘13)하여 운영
 - 태풍 및 지진해일 대응체계 구축과 방재기능 강화 기술개발 및 기후변화 대응관련 설계기준 개선 추진
 - 남해권 재해피해 예측도 및 비상대처 계획
 - 고파랑에 적합한 신형 소파블럭 개발
 - 잠제, 혼성방파제 등 설계기법 개선 등

- 자료의 보전
 - 태풍·해일 발생시 각종 자료의 보전(지적, 건물, 권리관계, 지하매설물, 측량도면, 정보도면 등) 및 자료보관체제의 정비
 - 항만시설물 관리자는 원활한 복구를 위해 미리 중요한 소관 시설의 구조도, 기초지반상황 등의 자료정비 및 피해방지

다. 대비대책

1) 대비활동체제의 확립

- 항만시설물 경계순찰을 위한 사전준비 및 장소와 경로의 선정
- 항만시설물 재난에 대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훈련, 행동매뉴얼 정비 및 국민 행동요령 홍보
- 항만시설물 재난관련 지자체 및 관련 행정기관의 대비대책 지원,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등
- 항만시설물재난 대비 응급대응체계 및 비상연락근무체계 정비

2) 피난조치 활동체제의 정비

- 항만시설물 재난시 즉시 피난 유도 및 권유 방식
- 항만시설물재난에 대한 상황 전개에 따라 피난을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방식
 - 항만시설물 재난을 고려한 구체적인 피난방침에 따라 결정
- 항만시설물 재난에 대한 피난 유도, 지시를 위한 통신 등 정보 전달체제 정비
- 항만시설물 재난시 안전한 피난시설, 피난경로 사전정비

3) 재난대비 재난정보·상황관리체제 확립

- 항만시설물 재난대비 직원의 비상소집체제 정비, 정보수집 전달 수단 확보
- 항만시설물 재난대비 응급활동을 위한 행동요령, 자재 및 장비의 사용방법 숙지

4) 항만시설물 재난정보의 전달·분석체제 구축

- 항만시설물 재난대비 기상 상황관측 정보수집, 전파체제 및 시설 정비
- 항만시설물 재난대비 야간 및 휴일 등 행정 사각 시간대 대응 체제 확립
- 항만시설물 피해현장 정보수집의 신속화·체계화
- 항만시설물 재난 대비 비상통신체제의 정비, 유·무선통신 시스템의 종합적 운용 및 응급대책 등 중요통신망의 확보 대책
- 항만시설물재난 대비 이동통신의 통신폭주 대책 강구, 비상시 운용계획 조정 및 피해상황의 화상전송 무선시스템 구축

5) 2차 재난 방지대책

- 이상고조, 풍랑, 조위 변화에 의한 항만 및 항만배후지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항만시설물을 점검하고 재난우려 시 신속한 대피 조치
- 항만시설물 침수에 따른 전기 감전사고 방지대책
- 항만시설물 침수피해 확대방지를 위한 이동식펌프 보유 및 배수 대책

6) 구조·구급 대책 수립

- 항만시설물을 재난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 자원 동원계획 및 재난대응 훈련계획 수립·시행
- 항만시설물 재난에 대비한 유관기관과 긴급 지원체계 구축

라. 대응대책

1) 항만시설물 대응활동체제의 확립

- 상황접수, 보고 및 전파, 긴급대피 조치 지시 및 확인체계 구축
- 항만시설물 재난 시 지자체 및 관계 행정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조·지원체계 구축
- 항만시설물 재난시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비상단계 근무계획 수립, 사고수습기구 운영방안 검토
- 항만시설물 재난시 응급복구 장비 및 복구 자재 지원 등

2) 항만시설 재난발생 직전의 대책

가) 항만시설 재난상황 보고체계 구축

- 기상특보상황 등을 감안 항만시설물 재난관리체계 구축·운영
- 중점대응기간
· 태풍, 해일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

-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인원 증원
 - 준비단계 : 상시대비 및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 발령시
 - 비상단계 :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 발생우려가 높을 경우

나) 기상상황 및 재난상황 등 초기대응

- 재난사전조치 활동
 - 태풍·해일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물의 예방조치 및 장비 등의 적절 조작 대비
- 항만시설물 피해상황 등의 조사보고
- 지역재난대책본부의 응급조치 실시 현황 확인 및 지원
 - 피해위험지역 내 피난의 권고 및 지시
 -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질서 유지
 -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 항만 시설물 및 운영 관리
 - 공사용 장비 및 인력 등 안전지대 신속 대피유도
 - 항만 내 적재화물의 안전장소 이동 및 결박조치
 - 항만 내 계류 중인 선박 및 선원 이동조치
- 상호협력
 - 항만시설물의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인접 시·도 및 시·군·구간 상호 지원 협력체제 구축
 - 항만시설물의 재난 규모 및 분야별로 지원협력 행동요령 숙지
- 파견지원 요청
 - 지진재난 발생에 대비 관계기관은 물론 민간단체에도 역할을 분담하고 즉시 파견요청

3) 재난대응 대책상황실 구성·운영

- 지진·해일 매뉴얼에 따라 재난규모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구성·운영

4) 재난정보 수집·연락 및 통신수단 확보

- 항만시설물 피해상황 조기파악 활동
 - 재난발생 후 시설물피해 상황에 관한 재난정보 수집, 관계기관에 보고 및 전파
- 항만시설물 응급조치 활동정보 교환
 - 항만시설물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활동사항을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유관기관과 정보교환
- 항만시설물 피해에 따른 통신수단의 확보
 - 항만시설물 재난 발생시 중요 통신수단을 우선적으로 확보 조치

5) 2차 재난방지대책 실시

- 2차 피해우려지역 내 항만시설이용자 및 주민에 대한 대피 명령
- 항만시설물 침수피해의 확대방지
 - 항만시설물침수 피해지역의 배수실시와 시설붕괴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확대방지 대책강구
 - 항만시설물 침수피해의 확대를 막기 위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실시 및 운영지원
- 이상고조, 파랑 등의 대책
 - 이상고조, 파랑, 조위의 변화에 의한 침수방지를 위하여 항만시설물을 점검하고 재난 우려시 신속한 응급조치
- 침수에 의한 구조물 등의 추가 붕괴에 대비, 시설물 안전도 검사, 응급조치 및 전기·가스 차단 요청(한전, 가스공사)
- 항만시설물의 붕괴대책
 - 여진에 의한 항만시설물 등의 추가 붕괴에 대비, 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및 응급조치
- 폭발 및 화재방지 대책
 - 항만시설물의 폭발, 가스누출 및 화재 위험이 있는 시설의 2차 재난방지를 위한 점검 및 응급조치

○ 대체항 지정·운영

- 긴급 물자 수송을 위해 지방항만청별로 자체 부두실정 및 피해정도에 따른 대체항 지정·운영(관내의 타 부두 활용 또는 인근의 타 항만청 부두시설 이용 등)

마. 복구대책

1) 항만시설물 복구활동체제의 확립

- 항만시설물 피해 조사단 구성·운영
- 항만시설물 복구를 위한 지자체 및 관계행정기관의 대응대책 조정 및 지원 등

2) 항만시설물 복구 기본방향 결정

- 항만시설물 피해상황,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원상복구와 개량복구의 기본방향을 결정

3) 피해복구 대책 수립 및 기술자문단 운용

- 수습·복구계획 수립·시행
- 피해조사 및 복구를 위한 분야별 전문 기술자문단 운용

4) 항만시설물 응급복구

- 복구 인력 및 시설·부품 등의 확보
- 응급조치 필요 토지, 건축물, 물품 등의 수용·사용·보관
- 항만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계기관 등에 응급조치
 - 복구장비, 인력, 자재 소요파악 및 복구방법 결정
 - 자체 인력 장비 우선활용, 부족시 지방항만청 및 지자체 등에 지원요청
 - 조속한 응급복구 시행 및 사고 잔재물 소거처리
 - 화재·폭발 등 2차 피해 유발요인 진단 및 제거
 - 유관기관에 인접지역 시설의 피해확산방지 협조요청

5) 항만시설물 피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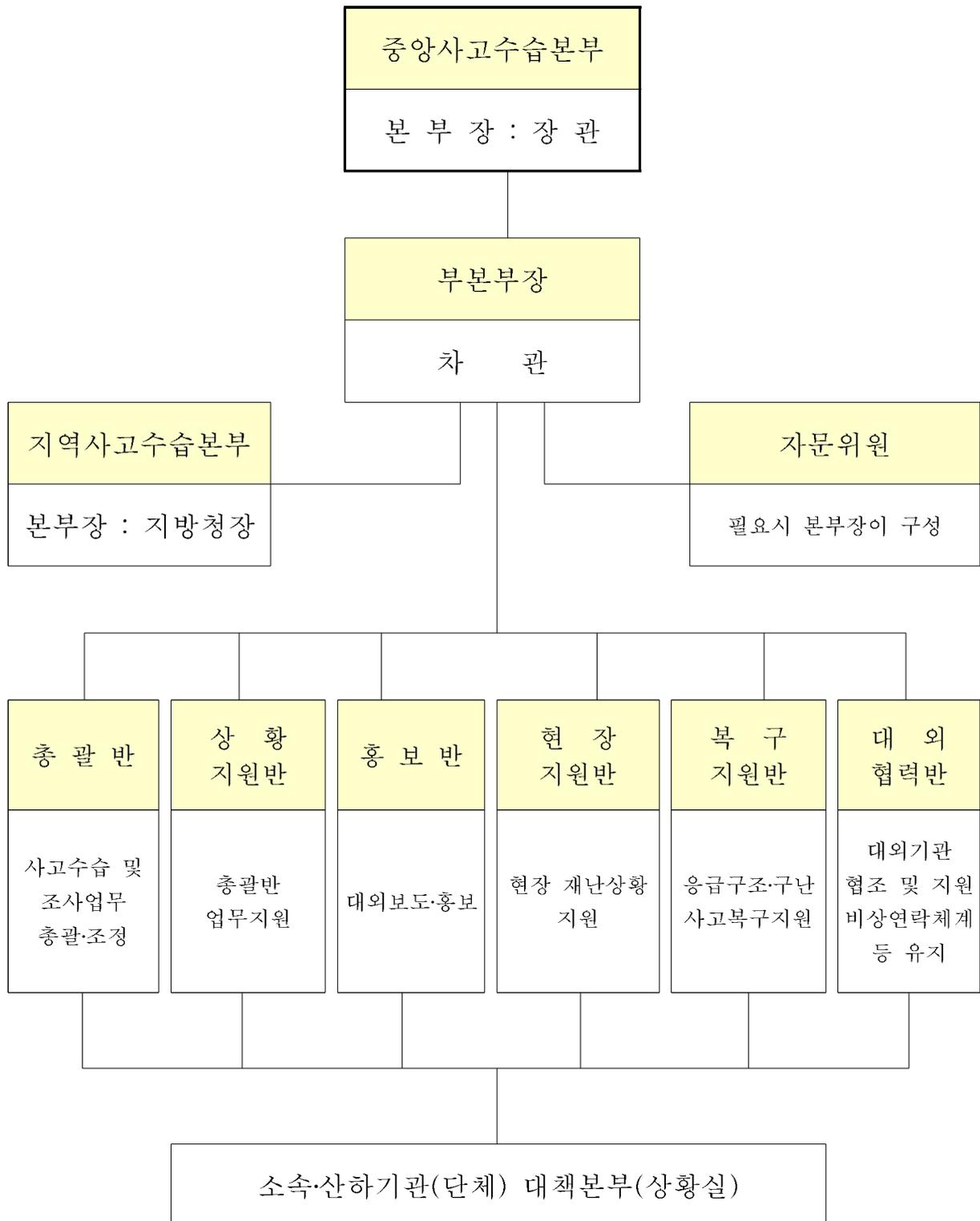
- 재난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근원적 대책강구를 위해 학계·민간전문가 등을 위주로 편성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 현장을 조사·점검하여 사고원인 규명
- 정밀안전진단, 안정해석 등을 통한 항구복구 대책 수립
- 증거보존자료의 수집
 - 사고원인에 관계되는 증거물을 현 상태대로 보존하고 사고 당시 상황과 복구과정 등을 사진촬영
 - 공조협의기관(경찰서, 군부대, 소방서 등)에 증거물 보존 등 사고현장조사에 관한 협조지원 요청
- 배상(보상) 기준의 설정 및 피해자 배상(보상) 계획 수립
- 조기협상이 되도록 적극 중재 유도

6) 재발방지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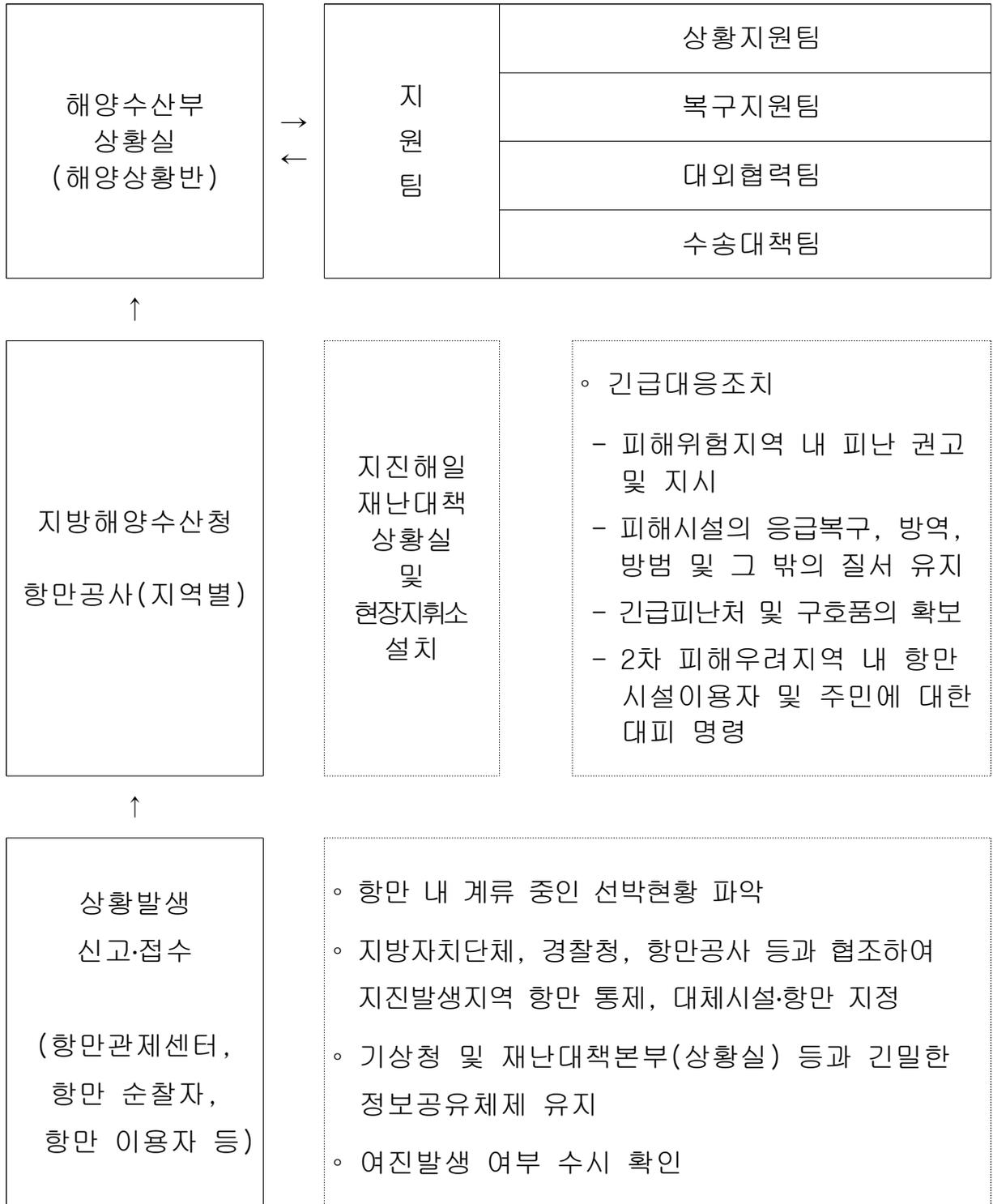
-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
- 제도개선 사항 등 종합대책 마련

바.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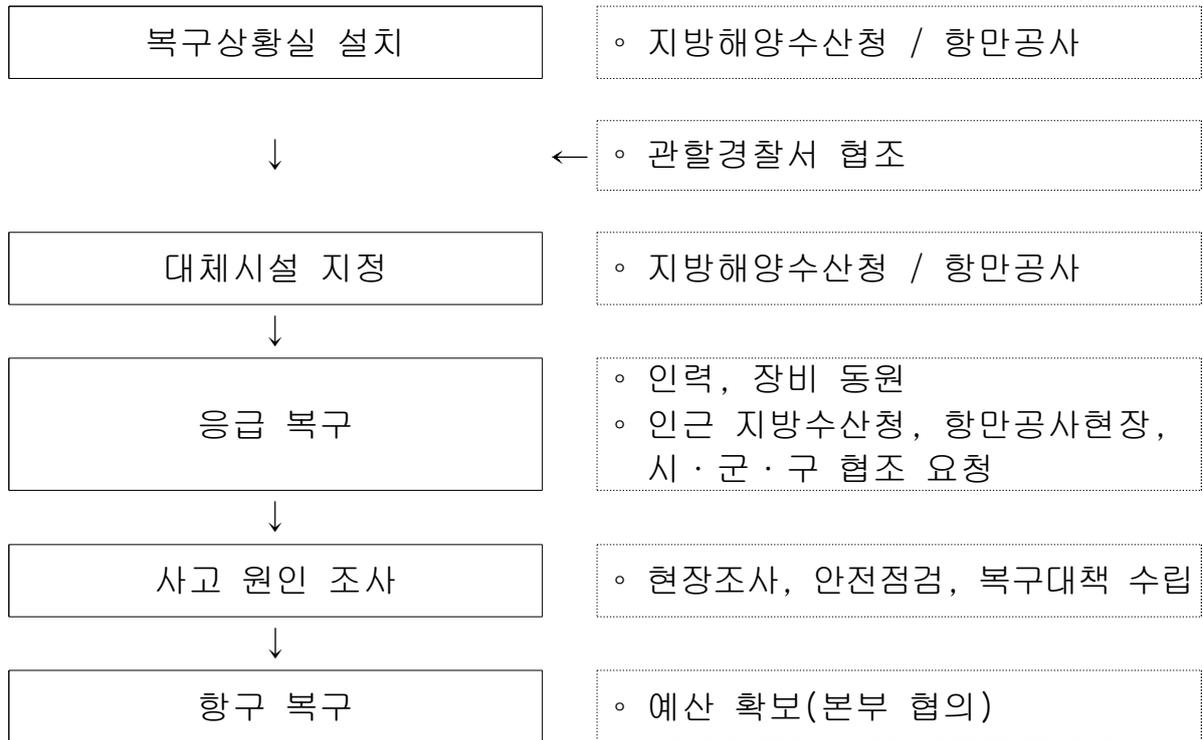
□ 기본체계도



□ 상황보고 체계



□ 수습·복구 체계도



사.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14년 실적	'15년 계획	비고*
소 계	180,511	203,592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방파제 보강	64,106	78,584	
유지보수 (안벽, 갑문 등 보수)	116,405	125,008	

* 내역사업인 경우 내역사업명을 비고란에 표기

3-4. 해파리 대책(수산자원정책과)

가. 개요(목적)

- 수온상승, 연안오염 및 수산자원 고갈 등 해양생태계 변화로 국내 연안에서 해파리가 지속적으로 출현 함에 따라 해파리 대량 출현 등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로 수산업피해 최소화
- (노무라입깃해파리) 2~3년 간격으로 대량 출현하는 경향으로 불 때 전년 대비 출현 증가 예상
 - * 동중국해에서 발생, 6~8월부터 해류를 타고 북상하여 우리나라 연안과 근해에 광범위하게 출현
- (보름달물해파리) 전국 연안에서 대량 출현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 필요
 - * 우리나라 연안·내만에서 4~5월에 출현하여 해류·조류를 따라 서해·남해 연안으로 확산

나. 주요내용

- 사전예방 강화
 - (목적) 해파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해파리 대량 발생에 의한 피해 방지
 - 주요내용
 - 해역별로 체계적인 해파리 모니터링 실시
 - 체계적인 유생 조사 및 제거 추진
 - (기대효과) 해파리 대량발생을 유생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여 해파리 대량 발생 방지

○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목적) 해파리 대량출현 등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로 수산업피해 최소화
- 주요내용
 - (알림서비스)해파리 출현정보 및 방제상황 알림
 - (구제작업) 해당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심'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제거
 - (수매사업) 해파리 자원화를 위한 수매사업 추진
 - (피해지원) 해파리로 인한 어업용 시설(어구·어망 등)파손 등의 피해 발생시 시설비 및 철거비 등 경제적 지원
- (기대효과) 해파리 대량발생 대국민 알림 서비스로 인한 조업 불능, 어구파손 등을 예방하고 어업피해 발생 시 지원

○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목적) 중장기적인 해파리 피해 방지 대책 추진
- 주요내용
 - (해파리 식품산업화) 해파리 원료 수급부터 가공, 유통 및 판매 까지 기술적·재정적 지원
 - (해파리 이동예측 모델 개발) 해파리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기대효과) 중장기 방지 대책으로 해파리 피해 최소화

※ 단계별 위기경보

○ 관심(Blue)

- 해파리 부착유생 대량서식 및 부유유생 대량 출현확인

○ 주의(Yellow)

- 보름달물해파리 유체 및 성체의 국지적 대량출현 확인
- 주변국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 유체 및 성체 대량발생 정보입수

주의보	- 해파리가 국지적으로 발견(보름달물해파리 5미 이상/100m ² , 노무라입깃해파리 1미 이상/100m ²)되고, 전 연안에서 모니터링 발견률이 20%를 초과하여 어업 피해가 우려될 때
------------	---

○ 경계(Orange)

- 보름달물해파리 성체의 대량발생 및 전국적 확산
-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우리해역으로 대량 유입

경보 (경계)	- 해파리가 넓은 해역에서 발견(보름달물해파리 20미 이상/100m ² , 노무라입깃해파리 3미 이상/100m ²)되고, 전 연안에서 모니터링 발견률이 50%를 초과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할 때
--------------------	---

○ 심각(Red)

- 전 연안에서 해파리의 대량출현으로 피해지역 확대
- 어업시 해파리 다량혼입으로 인해 출어포기 및 어구파손 속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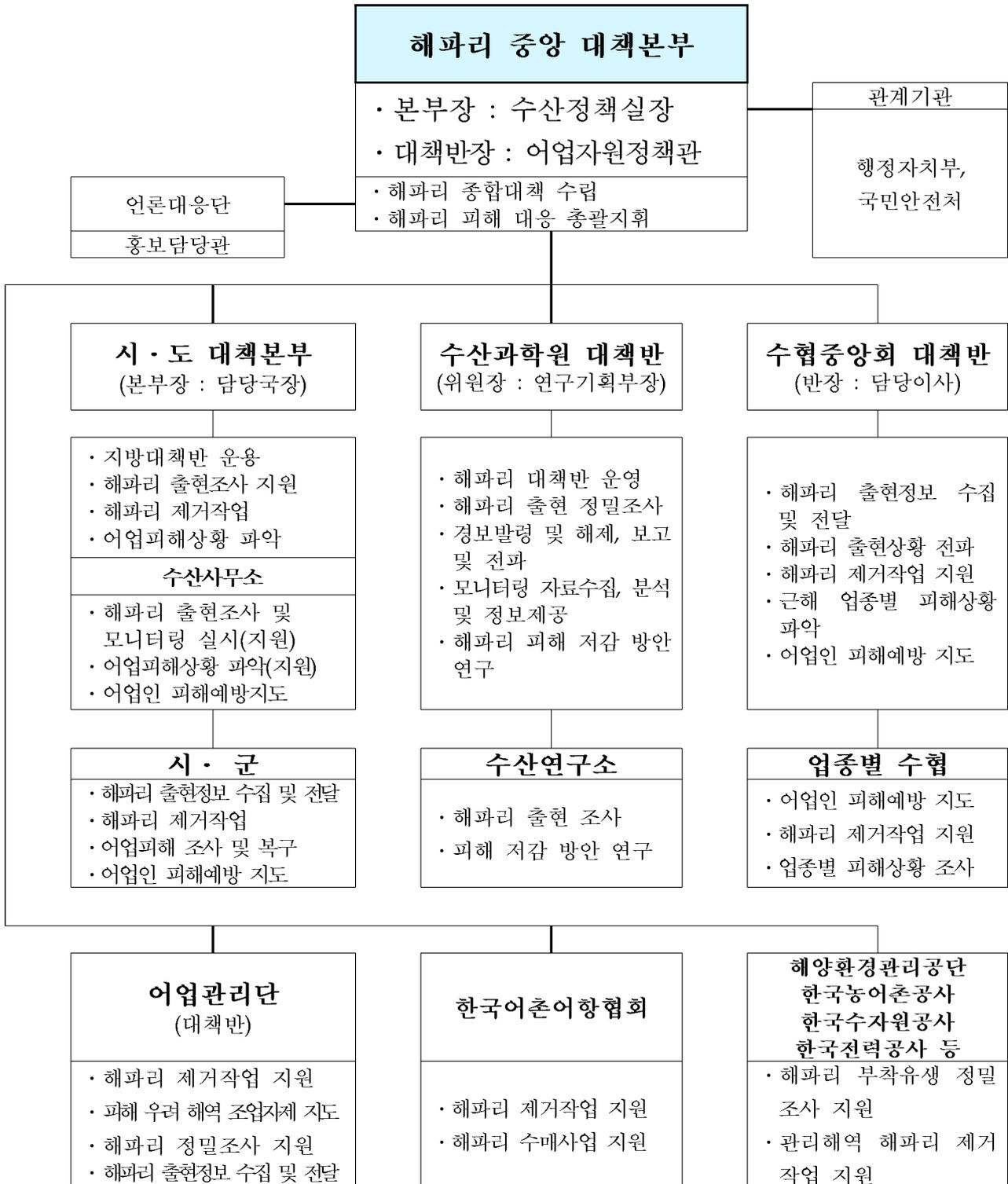
경보 (심각)	- 해파리가 대부분의 해역에서 발견(보름달물해파리 100미 이상/100m ² , 노무라입깃해파리 10미 이상/100m ²)되고, 전 연안에서 모니터링 발견률이 80%를 초과하여 어업피해가 심각할 때
--------------------	---

○ 복구(사후)대책

- 해파리 집중 출현 시 민·관 합동 제거작업 추진
- 해파리 수매사업 실시
- 재해 발생 시 어업용 시설의 피해지원

다. 추진 체계 및 일정

○ 해파리 발생에 따른 대응 체계도



○ 기관별 주요업무

구 분		주 요 임 무
중앙 대책 본부	총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상황 및 대책 종합 ○ 정보 접수·전파 및 각종 상황처리 ○ 중앙대책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연락 ○ 해파리 피해저감 방안 강구
	상황대책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파리 제거 지휘 및 제거선박·장비지원 ○ 해파리 (항공)예찰 및 정밀조사 지원
	피해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피해상황 파악 및 집계 ○ 재해대책심의위원회 대응 및 복구 지원계획 수립
지방 대책 본부	시·도 (시·군, 수산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대책반 운영 ○ 해파리 출현정보 수집 및 전달 ○ 해파리 발생·출현조사 지원 ○ 해파리 부착/부유유생, 유·성체 제거작업 실시 ○ 어업인 피해예방 지도 ○ 어업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과 이행
	수산과학원 (수산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파리 부착/부유유생 및 유·성체 정밀조사 ○ 피해저감 및 효과적인 제거방안 연구 ○ 해파리 모니터링 자료수집, 분석, 정보제공 ○ 해파리대책반 운영 ○ 해파리 경보발령·해제 보고 및 전파
	어업관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파리 제거 및 정밀조사 지원 ○ 해파리 출현정보 수집 및 전달 ○ 어업인 피해예방 지도 ○ 대책반 운영
	국민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파리 (항공)예찰·제거활동 지원
관계 기관	행정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예산지원
유 관 단 체	수협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현황 전파 ○ 피해 예방 지도 및 피해상황 파악 ○ 제거 인력·장비 지원 ○ 해파리 출현정보 수집 및 전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해양환경관리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해역(시설) 폴립·유생조사 및 제거 작업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파리 제거 인력·장비 지원

○ 단계별 대책

- (예방대책) 해역별 모니터링 실시, 체계적인 유생 조사 및 제거
- (대비대책)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 실시
- (대응대책) 상황보고, 대응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 (복구대책) 어업 피해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추진

○ 주요 추진일정

- 위기상황 발생시 해양수산부 내부 및 산하기관(단체)에 위기경보 발령 상황을 전파
- 대책반 편성 운영 및 관계기관 회의 개최

라.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14년 실적	'15년 계획	비고*
소 계	11	19	
해파리 구제비(지자체)	9	17	
시험연구비(과학원)	2	2	

* 내역사업인 경우 내역사업명을 비고란에 표기

3-5. 수산물 안전관리대책(어촌양식정책과)

가. 개요(목적)

-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위생 관리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수산물 수출 및 국내 소비를 촉진

나. 주요내용

- (수산물위생관리) 국내외 위생요구 조건 준수를 위해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 등 생산단계 위생관리 강화, 생산자(어업인)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 및 홍보 실시
- (수산물생산해역위생관리) 정착성 수산동물 생산해역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조사 사업 추진 및 주요 '정착성 수산동물' 생산해역을 신규 지정해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 * 생산해역 주변 육·해상오염원의 분포현황, 방출수 오염도 및 해역 영향 평가
-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유해생물구제사업) 수산생물 질병예방 및 유해생물 사전차단으로 양식업 생산성 증대

다. 추진체계 및 일정

- (수산물위생관리) 위생약정 체결국가 및 상대국과의 위생협력 등을 위한 점검, 회의 개최, 생산단계 위생관리를 위한 양식장 HACCP 적용 확대 및 수산물 위생안전관련 대국민 홍보, 생산·유통·판매 등에 대한 수산물 위생안전 집합 교육 실시

- (수산물생산해역위생조사) 주요 패류 생산해역(70개 해역)에 대해 육·해상 위생조사 및 오염원 조사 실시
 - * 위생조사 및 오염원 조사 : 수질(수온, 염분, PH, DO 등), 생물(대장균군, E.coli 등), 오염원 방출수(유량, 분변계대장균) 조사
-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유해생물구제사업) 수산생물 역학조사, 방역사업비, 교육비 및 수산동물 예방백신 지원을 통한 질병 확산 방지
 - * 역학조사 및 방역비 지원, 예방백신 지원확대('15: 3건 → '16: 5건)
 - ** 출하승인, 품목허가 등 법정업무 수행 ('15: 616건 → '16: 700건)

라.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14년 실적	'15년 계획	비고*
소 계	11,869	12,200	수산물생산해역위생조사,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유해생물구제사업이 '15년부터 수산물위생관리로 통합
수산물위생관리	2,815	12,200	
수산물생산해역위생조사	2,300	사업통합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유해생물구제사업	6,754	사업통합	

* 내역사업인 경우 내역사업명을 비고란에 표기

제4장 재정투자계획 (총괄)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세 부 사 업*	'14년 실적	'15년 계획	비고
총	계	393,366	427,206	
중점추진과제	소 계	-	1,921	
	구명조끼 내구연한 평가 조사연구	-	180	단년도 사업
	선박운송안전확보	-	1,300	해양안전체험관
	“	-	441	인적과실예방
자연재난	소 계	150,514	150,091	
	항만시설 안전점검	7,334	4,785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항만 내진 보강	8,888	8,829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2,943	5,000	
	국가해양관측망 관리·운영	13,830	16,524	
	접적해역 정밀조사	15,000	15,000	
	기후변화 적응 해양기반구축	7,300	3,500	
	해양정보활용시스템 개발·연구	500	500	
	적조방제	2,500	2,500	위해생물구제사업
	적조대응 이동식가두리시설	1,764	1,764	적조피해예방사업
	품종변경에 따른 시설지원	1,750	750	적조피해예방사업
	어장재배치	-	1,000	적조피해예방사업
	방제장비보관시설	-	1,500	적조피해예방사업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 개발	2,382	4,000	연안이상현상 원인규명 및 대응방안
	연안정비	49,867	52,182	
	해양 및 수자원 관리	32,061	26,997	
	연안정비(대산청)	4,395	5,260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세 부 사 업*	'14년 실적	'15년 계획	비고
사회재난	소 계	-	-	
안전 관리	소 계	242,852	275,194	
	선박운송안전확보	481	752	인적과실예방
	해양사고 예방활동지원	-	5,500	해상교통영향평가 해사안전감독관
	표지시설	49,980	53,131	교통시설확충 개량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방파제 보강	64,106	78,584	
	유지보수 (안벽, 갑문 등 보수)	116,405	125,008	
	해파리 구제비(지지체)	9	17	
	시험연구비(과학원)	2	2	
	수산물위생관리	2,815	12,200	
	수산물생신해역 위생조사	2,300	사업 통합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유해생물구제사업	6,754	사업 통합	

제5장 행정사항

□ 주요재난 유형별 담당자 현황

○ 주요재난(주관 : 해수부, 안전처, 미래부, 원안위, 복지부) 11개

구 분	매뉴얼 명칭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 고
자연 재난	적조	양식산업과 하해성(5641)		표준 매뉴얼
	조수	해양영토과 노정식(5358)		
	풍수해	해사안전관리과 손소연(5856)	어촌어항과 송경석(5656) 소득복지과 이진우(5471) 항만운영과 강경덕(5780) 항만개발과 전한승(5951)	
	지진	해사안전관리과 손소연(5856)		
	대형화산폭발	해사안전관리과 손소연(5856)		
인적 재난	대규모 환경오염 (해양/수질)	해양환경정책과 최재용(5283)		표준 매뉴얼
	해양 선박사고	해사안전관리과 김일엽(5859)	국제여객선 해운정책과(5721) 연안여객선 연안해운과(5737) 연근해어선 지도교섭과(5568) 원양어선 원양산업과(5367)	표준 매뉴얼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해양환경정책과 이명준(5287)	항만운영과 최영숙(5776) 어촌양식정책과 오태기(5623)	
	감염병	해사안전관리과 손소연(5856)	항만운영과 강경덕(5780)	
사회적 재난	GPS 전파혼신	해사안전시설과 김강온(5880)		
	우주전파 재난	해사안전시설과 김강온(5880)		
	육상화물운송	항만물류기획과 이광석(5754)		

○ 주요상황별 재난(우리부 선정) 2개

- 해파리 대량발생 : 수산자원정책과 함재국(5540)
- 폭염 : 어촌양식정책과 김건효(5612)

○ 국가 기반시설관리체계 보호(주관 : 안전처) 1개

- 항만운영과(강경덕, 5780), 항만개발과(전한승, 5951)

○ 선박사고 비상연락망

-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전 화	팩 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9	044-200-5848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52	044-200-5869
	종합상황실	044-200-5895	044-200-5886
	해운정책과	044-200-5721	044-200-5729
	연안해운과	044-200-5737	044-200-5739
	선원정책과	044-200-5746	044-200-5488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051-400-4311~3	051-400-4194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51-609-6541,6351	051-609-6319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58	032-884-3564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61-650-6037	061-654-2456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55-981-5091	055-981-5091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33-520-6148	033-520-6140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63-441-2244	063-441-2352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61-280-1641	061-280-1655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54-245-1527	054-242-1326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31-680-7225	031-680-7229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52-228-5580	052-228-5559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41-660-7638	041-663-0347

- 관계기관

기관명	부서	전화번호(FAX)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02-770-2892~3 (770-4788~90)
국무총리실	상황실	044-200-2814(주), 200-2861(야)
외교부	상황실 재외국민보호과	02-2100-7000, 7100(2100-7998) 02-2100-7569(2100-7974)
국가정보원	대테러상황실	02-572-3023, 9103 (572-5671)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2-2100-0001~5 (2100-4094)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	032-835-2442, 2542 (835-2842)

- 유관단체

단체명	담당부서	전화번호(팩스)
한국선주협회	해무팀	02-739-1551 (F 739-1562)
한국해운조합	안전운항팀	02-6096-2142 (F 6096-2149)
한중카페리선사협회	사무국	02-701-2026 (F 701-2027)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051-462-3056 (051-463-8348)

- 유관기관 연락처

기 관	담당부서	연락처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02-770-2892~3
	해양수산비서관	02-770-2684
국가정보원	대테러상황실	02-572-3023, 9103
	상황실	02-911-5555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	044-200-2348
	농림국토해양정책관	044-200-2233
	외교안보정책관	044-200-2125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 환경과	02-397-7355
외교부	국제안보과	02-2100-7279
	재외국민보호과	02-2100-7569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02-2110-4042
국방부	정책기획과	02-748-6215
	재난상황실	02-748-3183~4
	재난관리지원과	02-748-5773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총괄과 자연재난대응과 사회재난대응과	02-2100-0686 02-2100-0719 02-2100-0731
	119구조과 119구급과	02-2100-0885 02-2100-0906
	해양경비안전총괄과	032-835-2116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정책과	044-203-2918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	043-719-7192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43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16
검찰청	공안3과	02-3480-2340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02-3150-2856
합동참모본부	정보상황실	02-748-0301~4
국군기무사령부	대간 대테러과	02-731-4755

○ 지진/해일 등 비상연락망

- 소속기관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비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51-609-6212	051-609-6219	
	제주해양관리단	064-720-2637	064-752-2163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32-880-6415	032-882-4642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61-650-6009	061-654-2353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55-249-0308	055-245-0885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33-520-6117	033-520-6110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63-441-2222	063-441-2351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61-280-1612	061-280-161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54-245-1512	054-245-2122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31-680-7227	031-680-7229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52-228-5531	052-228-5549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41-660-7610	041-663-0356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	051-400-4211	051-400-4192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관리과	051-720-2980~83 051-720-2991~94	051-720-2979	
동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051-410-1005	051-410-1036	
	안전정보과	051-410-1060~1	051-410-1062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061-240-7903	061-240-7978	
	안전정보과	061-240-7904	061-240-7958	

- 시·도 자치단체

부서명	담당부서	담당분야	전화번호	팩스번호
부산시	수산정책과 해양정책과	재난, 적조	051-888-6782 051-888-3312	051-888-3259 051-888-3789
인천시	수산과	”	032-440-4851	032-440-8690
울산시	항만수산과	“	052-229-3023	052-229-2969
경기도	해양수산과	“	031-8008-4529 031-8008-4526	031-8008-2679
강원도	어업지원과	“	033-660-8362	033-662-8810
충북도	축산과 (수산팀)	“	043-220-3753	043-220-3719
충남도	수산과	“	042-220-3529	042-251-2819
전북도	해양수산과	“	063-280-4654	063-280-2819
전남도	수산자원과	“	061-286-6925	061-286-4795
경북도	수산진흥과	“	053-950-2362	053-950-2679
경남도	어업진흥과	“	055-211-3851	055-211-3859
제주도	수산정책과	“	064-710-3213	064-720-3219

- 유관단체

· 부산항만공사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건설계획팀	051-999-3214	051-988-5588
일반부두팀	051-999-3131	051-988-3388
(야간)당직실	051-999-3114	051-988-5588

· 인천항만공사

부 서 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항만건설본부 (시설관리팀)	032-890-8260-5 (032-890-8262)	032-886-6504
상 황 실	032-890-8297	032-886-8229

· 울산항만공사

부 서 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항만운영본부 (항만공사팀)	052-228-5312 (052-228-5466)	052-228-5319 (052-228-5469)
상 황 실	052-228-5300	052-228-5469

· 한국해운조합

기 관 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본부안전관리실	02-6096-2140-3	02-6096-2149
부산운항관리실	051-660-0271	051-660-0279
인천운항관리실	032-887-9321	032-883-8593
목포운항관리실	061-240-6030	061-240-6042
제주운항관리실	064-757-2892	064-753-9430
여수운항관리실	061-663-1197	061-663-1194
마산운항관리실	055-248-8691	055-247-6116
군산운항관리실	063-445-3491	063-443-4315
완도운항관리실	061-552-0065	061-552-4208
통영운항관리실	055-642-5337	055-641-2638
포항운항관리실	054-245-1820	054-245-1824
보령운항관리실	041-930-5040	041-930-5045
동해운항관리실	033-533-5389	033-533-1027

· 해양환경관리공단

기 관 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본부 당직실	02-3498-8585	02-3498-8687
부산 방제팀	051-466-3924	051-466-3915
인천 방제팀	032-884-7706	032-884-7703
여수 방제팀	061-665-7705	061-665-7702
울산 방제팀	052-261-3438	052-260-8909
대산 방제팀	041-664-9103	041-664-9104
마산 방제팀	055-223-5660	055-244-4229
동해 방제팀	033-532-4056	033-532-3559
군산 방제팀	063-468-2101	063-468-2102
포항 방제팀	054-231-6656	054-231-6657
평택 방제팀	031-683-7973	031-683-7901
제주 방제팀	064-753-4376	064-753-4375

· 수협중앙회 비상연락망

소 속	직 급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협 중앙회	기획관리부	02-2240-2121	
	어업정보통신본부	02-2240-2323	02-2240-3027
	회원경영지원부	02-2240-2251	
	안전관리실	02-2240-2344	02-2240-3034
	공제보험부	02-2240-2941	
	경제기획부	02-2240-2372	